발 간 등 록 번 호 전북교육 2024-21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 북 교 육 인 권 센 터

Contents •

	교육활동 침해행위	··· 1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3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u>5</u>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u>5</u>
[I 교권보호위원회 ····································	11
	1. 시•도교권보호위원회 ·····	13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 16
I	II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	21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23
	2.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5단계	27
	3.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51
I	V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	57
	1 그러워 지트버릇 120도 오여	
	1.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59
	1. 교견심해 식동면호 1395 운영 ···································	
		60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 60 ·· 65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	·· 60 ·· 65 ·· 67



V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77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79
	2. 「형법」제11장(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80
	3.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82
	4.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84
	5.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85
	6.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88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88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4 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cdot\cdot$	90
	9.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92
	10.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94
	11.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95
	1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6
	13.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7
	14.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99
•	부록 10	01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시나리오(예시)1	03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나리오(예시)1	08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1	11
	4. 각종 서식	15
	5.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1	53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교권 침해행위'라는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명명하고, 교육활동 보호 관점에서 교원을 보호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¹⁾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 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 하는 행위

^{1)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²⁾ 등^{**}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 '보호자 등'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 학생·학부모의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이 해당될 수 있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대상

●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대상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어야 한다.

가. 교원의 범위

-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국립, 공립, 사립 포함)에 근무하는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을 말한다.
- ②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 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 A 현행 법령상 「초·중등교육법」제22조의 강사 등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보호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학생 조치와 피해지원은 교원에 준하여할 수 있습니다.
 - ▶ (학생 조치)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엄중하게 대응
 - (강사 지원) 강사 등에 대한 치유지원은 침익적 조치가 아니므로,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시·도교육청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지원 가능
 - ※ 시·도교육청 시간 강사 지원 사례
 - A교육청 : 교원 외 강사 등에 대해서도 심리·법률 상담 지원

^{2) 「}교원지위법」 제19조에 의하면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중'의 의미

-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교원에 대한 권리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교원지위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활동 중이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 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 '교육활동 중'의 예시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 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② 학생의 등·하교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 및 일과 시간 이외의 교외생활지도
- ③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④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⑥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행하는 생활지도나 상담
- ①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 임장 시 행하는 활동
- ⑧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학생징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안 조사 및 상담 등
- ⑨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출근 시간 전 또는 퇴근 시간 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상황·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학생에 관한 상담
- ⑩ 그 밖에 법령에 의해 교원이 직무상 행하는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 ☑ 퇴근시간 이후 학부모가 교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자녀에 대한 학업상담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나 교원에게 폭언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학생, 학부모와 학업 및 생활지도 등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 ☑ 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 A 네,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 명예훼손 등은 행위 당시 피해자를 대면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한번 글이나 게시물이 작성된 다음에는 그 피해가 계속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규정한 취지 및 해당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 동료 교원과 업무 분장으로 갈등이 있는데,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나요?
- A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동료 갈등, 업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등 고층이나 관리자의 복무관리 또는 행정사항에 대한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의 제도를 통해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

● 「교원지위법」제19조 및 「교육부 고시」 2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유형은 아래와 같다.

근거		침해행위 유형	비고
	「형법」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무고의 죄' 신설 ('24.3.28.)
	성폭력범죄 행위(「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교원지위법」	불법정보 유통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9조 (교육활동		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4.3.28.)
침해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신설 ('24.3.28.)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신설 ('24.3.2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³⁾	
교육부 고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육무 고기 제2조 (교원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신설 ('23.3.23.)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⁴⁾ 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3)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이 법률에 규정됨(2024. 3. 28. 시행). 이에 따라 교육부 고시도 개정될 예정이다.

^{4)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



교권보호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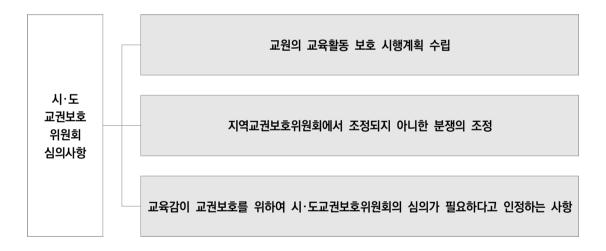


교권보호위원회

1 시·도교권보호위원회

● 시·도교육청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2조)

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나.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장 1명 포함)	위 중 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위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있는 사람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함 (1회 연임 가능)
		위원 해촉	임기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해당 안건과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임위원

다. 회의 소집 및 정족수(「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5항)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①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②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인정하는 경우	

라. 제척 등 사유(「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3조)

제척	기피	회피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 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에 기피 신청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 의무

- 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 이 되는 출석인원은 의결 당시 참여한 위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시까지 재적위원과반수의 참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피 신청 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 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

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령을 토대로 학교의 특수성 및 실제 발생하는 침해행위 양상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적합한 예방 대책을 수립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2. 사회봉사 1. 학교에서의 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지역 6. 전학 7.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적용 안 됨) 교권보호 위원회 법 제2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심의사항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위원 중 호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년 (1회 연임 가능)
50명 이하		위원 해촉	임기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최초(재) 구성 시 심의·의결 사항
 - (의결안건)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 (보고안건) 교육장이 정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규정 등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의2)

위원 정수	위원(장)	소위원회 역할	결과 보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위원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 장이 지명함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권보호
5명 이상	• 위원(장)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겸임 가능	심의 사항을 위임 받아	위원회에
10명 이하 (교육장이 정함)	• 교육장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음	심의·저리	결과보고

- 교육지원청에서는 소위원회 설치·운영 취지에 따라 학교급을 고려한 소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접수 사안의 학교급을 고려하여 해당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다
- 교육장은 소위원회의 심의·처리를 의결로 가주할 수 있다.
- 기타 관련 내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표준안' 참고하여 운영한다.

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및 정족수(「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제4항. 제5항)

회의 소집 사유	정족수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개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인정하는 경우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소집 사유 발생 시 소집기간(21일5)) 내 회의 개최

⁵⁾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 훈시규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 표준안'참고

마. 제척 등 사유(「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에 기피 신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 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의무

- 제척 등 사유가 있는 위원은 개의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인원은 의결 당시 참여한 위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시까지 재적위원과반수의 참석을 유지하여야 한다.
- 기피 신청 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한다.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가. 필요성

-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 및 사기를 저하시켜 학교 교육력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따라서 교원과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교원들이 교육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인 학생, 학생의 보호자, 교직원 등 모든 교육공 동체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선제적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 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근거:「교원지위법」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교원지위법 시행령」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대상: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
- 횟수: 연 1회 이상
- 학기 초 연수를 권장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 방법
 - 교직원: 교직원 회의 등 직장 내 연수, 원격 연수를 활용하여 실시
 - 학생: 교과 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을 활용하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토의·토론 등 학생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권장 학생자치회를 활용한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 실시
 - 학생의 보호자: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 SNS 등을 활용하여 실시
- 내용(「교원지위법 시행령」제21조)

대상	내용
교직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③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④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생의 보호자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③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④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⑤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

●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 5편

자료명	QR코드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초등 저학년편)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초등 고학년~ 중학교편)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중학교 고학년~ 고등학교편)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학부모편)	
교육활동 침해예방 동영상 교육자료(교원)	

●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 4권(초등, 중등, 학부모, 교원)

자료명	QR코드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초등)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중등)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학부모)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자료(교원)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https://forteacher.kedi.re.kr)-자료실

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자료'는 「교원지위법」 개정('24.3.28.시행)에 따른 변화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 시 활용 바람.

참고 「교원지위법」개정('24.3.28.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된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심의·의결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처리
-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신설
 - 「형법」제2편제11장(무고의 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②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신설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5단계

원칙	절차	업무 담당자 대응 요령	피해교원 대응요령	관련 서식
신속한 초기 대응	초기 대응 및 사인 신고 [학교]	 인지 즉시 적극 개입 교육현장 안정화 기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필요 시 업무대행자 지정 목격 학생 진정시키기 보호자에게 연락 사안신고서 접수(피해교원→학교) 사안 신고(24시간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 	• 침해행위 중단 요청 • 주변에 도움 요청 •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담당자에게 신고	• 사안 신고서 (서식1)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학교]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학교장)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응급처치, 병원후송, 심리 상담 지원 심리 상담, 법률상담, 공무상병가 신청 안내 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사안 발생보고(5일 이내, 학교→교육지원청)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면담 및 의사확인 의견서 접수 및 목격자 진술, 증거 수집 등 관할 교육(지원)청에 시안 발생 보고서 작성 제출(공문)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심리 상담 등 지원 요청 시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사안 발생 보고서 (서식2) 의견서 (서식3) 참고인 의견서 (서식4)
장 권 한 권 호 회 위 운	사안 조사 [교육 지원청]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중대사안 발생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교육부) 사안 조사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의 관련 자료 조사 쟁점사안 확인·점검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확인·점검 조치 필요성에 관한 사실 확인·점검 조사보고서 작성 	• 추가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 치에 관한 의견 진술	• 사안 조사 보고서 (서식5)
	지역 교권 보호 위원회 소집 운영 교육 지원청	안건 설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21일 이내) 교육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 관련자에게 출석통지 당사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분쟁조정 침해학생, 침해 보호자 등 에 대한 조치 의결 피해교원 추가 보호조치 권고 회의록 작성	사실관계 진술서면진술 가능	 출석통지서 (서식6) 의견서 (서식3) 조치의결서 (서식8)
	사안 종결 [학교, 교육 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결과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 재발방지조치, 추수지도 불복절차 안내·지원 	● 피해 회복 및 치유	 결과통지서 (서식9-1, 9-2, 10) 결과보고서 (서식11)

학교

가. 초기 대응 및 사안 신고 단계

1) 피해교원 대응요령

- 침해행위 중단 요청
- 동료교사 등 주변에 도움 요청 또는 현장에서 벗어나기
-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신고6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고 의사나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경우 신고서 등 서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학교장은 업무담당교원을 사전에 지정
- 침해행위 인지 즉시 개입
- 교육현장 안정화
 -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조치(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필요)
 - 필요 시 피해교원의 업무대행자 지정
 - 목격 학생 안정시키기
- 침해학생 보호자에게 연락

^{6) 「}교원지위법」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사안 발생 안내 및 면담 일정 협의
- 사안신고서(서식1) 접수
- 사안 신고
 - 24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 보고*
 - * 유선·구두 보고 또는 사안신고서(서식1) 제출(이메일, 공문 등)
-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
- 언론 등 대응 창구 단일화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V

- 학교장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 워을 즉시 부리
 - * 특별한 사유(「교원지위법」제17조제1항)
 - 교원의 반대 의사가 있는 경우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예시) 피해교원이 치유를 위해 특별휴가(또는 병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 분리의 취지
 - 관련자를 피해교원으로부터 분리하여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완화하고자 함
- 분리 절차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인지(접수)

- 피해교원에게 분리의사 확인
- ※ 분리 의사 확인서 (서식19)

분리방법 즉시 결정

-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 분리방법 결정
- ※ 학교장의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가능

침해학생 등 분리

- 최대 7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
- 침해학생(보호자)에게 통보 (유선통화 등)
-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 ※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자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함

• 분리 기간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 권장
-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 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분리 기간에 포함 하여 계산

• 유의 사항

-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 확인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 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에 대한 동선 분리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유영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로 이미 가해자 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할 수 있다.
-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분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 간을 정할 것
-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나.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1) 업무담당자 대응요령

-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기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실시
 - 특별휴가, 조퇴, 병가 허가
 - 응급처치. 병원후송 등 응급조치
 - 심리 상담, 법률상담,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등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수 있습니다.
- ②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지역교 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 별휴가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교원에게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나요?
- A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교원에게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도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7) 「}교원지위법」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 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하고도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8)
- 피해교원 및 관련자에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
- 사안 파악
 - 피해교원 면담
 - 피해교원 상태 및 의사* 확인
 - * 관련자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정도, 필요한 보호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분쟁조정 신청 여부 등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 ※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전후 사정, 동기, 피해정도 등
 - 문답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작성
 -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 관련자 상태 확인, 사안 처리 절차 안내
 - ·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분쟁조정 의사 확인
 - 사안 발생 경위 확인
- 그 밖의 사안 파악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 수집
 -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파악
 - ※ 관련 학생의 평소 품행,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 교우관계, 과거 피해교원과 관련자의 평소 관계, 피해교원의 피해 정도, 관련 학생과 피해교원 간 사과나 합의 여부, 피해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관련 학생의 장애 여부 등

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66호(2023.10.25.)]

-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서식2)
 -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의견서(서식3), 참고인 의견서(서식4) 작성

〈사안발생 보고를 위한 사안 파악 과정에서 주의사항〉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 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필요시 녹음 등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조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연계되지 않도록 예방, 문답시에는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파악

2) 피해교원 대응요령

-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조치에 대한 의사 제출(서식19)
- 특별휴가, 조퇴, 병가 신청
- 부상 치료 및 심리 상담 지원 요청
- 사안 발생 당시 상황 기록
- 면담 시 피해상황 구체적으로 진술
- 관련자 조치 및 보호조치에 관한 의견 진술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발생 보고(→교육지원청)

•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서식2)를 5일(주말, 공휴일 미포함)이내 관할 교육지원 청으로 공문제출*

교육지원청

다. 사안 조사 단계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보고서' 검토 및 확인

- 필요시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추가 면담
 -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 및 조력 제공
 - ※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가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조사 활용 시 한국어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
- 쟁점 사안 확인 및 점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 점검
-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 등 관련 증거 추가 수집
- 기타 조치 양정에 필요한 사항 조사
 - ※ 중대사안이거나 사안 발생보고서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현장 방문 사안 조사

〈사안 조사 단계에서 주의사항〉

- 단위학교에서 제출한 사안발생 보고서 면밀히 검토
- 사안발생 보고서에서 명확하지 않은 내용 등에 대해 피해교원 및 학생(보호자) 추가 면담
- 중대사안이나 사안 발생보고서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경우 등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사안 조사 실시
- 업무담당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 유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인 관용이나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징계를 운운하는 발언 등 하지 않도록 주의
- 관련 학생 면담 시 사전에 보호자와 협의 후 학습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실시
- 문답 시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진술 유도
- 진술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주의하고 가능한 의문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조사
- 사안 파악 단계에서 이미 확인이 완료된 내용을 중복하여 조사할 필요는 없음

2) 중대사안 발생 보고(관할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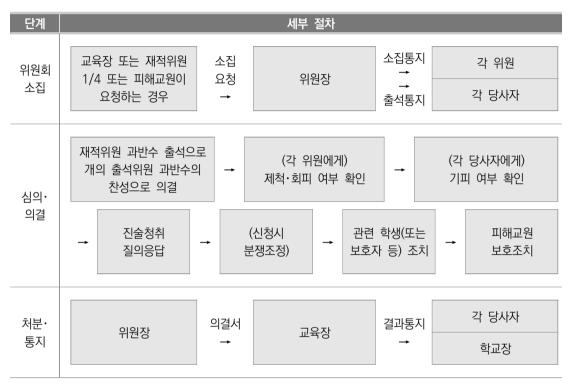
-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3)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서식5)

- 사안 발생보고서 검토 및 추가적인 피해교원·학생 및 보호자 면담, 사안 조사 등을 통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필요성 등에 관한 사실 판단

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단계

1) 운영 개요



※ 위원회 개의·심의·의결 시 'II. 교권보호위원회'의 정족수 참고

2) 소집 단계

- 안건 설정
-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 피해교원 요청 시 위원장이 회의 소집
- 사안 발생 보고를 받은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신속하게 위원회 소집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의 경우 21일 이내 소집 권장
-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출석통지(「행정절차법」제21조제3항) ※ 출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의견서(서식3 활용)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사안이 접수된 후 소집기 한을 경과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문제가 되나요?
- A 여기서 며칠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미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하도록 한 훈시규정이므로, 사안파악 및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소집기한 이후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여 회의소집이 위법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단계에서 주의사항〉

- 교육장은 신고 받은 사안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성립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지역교 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위해 사전에 수립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기준을 제공하여야 함
- 사건별·관련 학생별로 안건을 세분화하여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
- 출석통지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전화·문자 등을 병행하여 가급적 출석을 유도함
- 출석통지서에는 어떤 사유로 회의가 개최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안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함
- 당사자가 출석 거부 시 서면진술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서면진술도 거부시 진술포기서를 받거나 진술 을 거부하였음을 기록으로 남김

3) 심의·의결 단계

가) 심의 운영의 원칙

- 학생별로 사건을 나눠서 개별 심의를 원칙으로 함
- 원칙적으로 여러 학생에 대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해서는 안 됨
- 한 학생이 다수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병합하여 하나의 절차에서 심의 가능
- A학생이 B교사와 C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A학생의 'B교사에 대한 행위'와 'C교 사에 대한 행위'는 병합하여 하나의 조치를 결정
- A학생과 B학생이 동시에 C교사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A학생의 C교사에 대한 행위' 와 'B학생의 C교사에 대한 행위'는 구분하여 각 학생에 대해 별개의 조치를 결정

나) 심의의 진행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진행 개요

성원 보고, 개회 선언, 안건 상정 제척·회피 안내 사안조사보고 • 기피 여부 확인 신원 확인 피해교원 • 사안 설명 • 진술 청취 진술 청취 • 질의응답 • 조치결정에 관한 사항 고지 • 신원 확인 • 기피 여부 확인 관련 학생(또는 • 사안 설명 • 관련 학생(또는 보호자 등) 진술 청취 보호자 등) 측 • 관련 학생의 보호자 의견 청취 • 질의응답 진술 청취 • 조치결정 및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관계 전문가 : 담당 장학사, 변호사, 의사 등 외부 전문가)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분쟁조정 실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심의 •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의 심의 • 조치의 선택에 관한 심의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심의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 반성 정도 및 선도가능성, 관계회복정도 심의 - 가중·감경 여부 심의 - 조치 시간·일수 심의 - 부가조치 여부 심의 • 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의 심의 • 조치의 선택에 관한 심의 보호자 등에 대한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심의 조치 심의 - 반성 정도, 관계회복정도 심의 - 가중·감경 여부 심의 - 조치 시간 심의 (필요시)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심의 폐회 선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의사항〉

- 각 당사자 입장 시 기피신청 여부 확인
- 각 당사자의 자유로운 진술 기회 보장
-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일방적으로 관용과 이해를 구하는 발언, 일방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 등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주의
- 관련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책임의 자각과 반성을 촉구하고 피해교원과 관계 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되, 일방적으로 나무라는 발언, 인신공격성 발언, 심의와 관련 없 는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학생의 '보호자'란 누구인가요?
- A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예를 들어 학생과 동거하는 조부모)을 말합니다.
- 관련 학생이나 교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나요?
- A 「행정절차법」제12조제1항제3호, 제2항, 제11조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를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 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변호사 신분 증 사본 및 위임장을 제출받아 변호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이 지역 교권보호위원 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가 아닌 지인이나 친인척 등은 행정절차에서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의에 필요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심의

- 각 당사자의 진술, 문답서 및 진술서, 목격자 진술 또는 진술서, 조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결정한다.
- 각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위원회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상인이라 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인정되는 않을 경우 조치없음으로 종결 가능하다.

참고 학생의 인격 존중과 교육적 배려

- 학생에게 조치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 중에 따라 조치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함
- 학생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잘못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학생의 개전과 교육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함을 유념해야 함
- 절차 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적 목적에 부합해야 함

(2) 조치의 결정

(가) 조치결정의 기준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의 기준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②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③ 학생과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④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⑤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	5	5	5	
높음	4	4	4	
보통	3	3	3	
낮음	2	2	2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② 추가 판단 요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독조치 - 4호·5호·6호 부가 조치 의무 (「교원지위법」제25조제3항) - 1호·2호 부가조치 가능 (「교원지위법」제25조제4항)

-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조치없음	<u>.</u>	0~4	-
교내	선도	1호	5~7	학교에서의 봉사
이버기자	연계선도	2호	8~10	사회 봉사
지구기선	인계선도	3호	_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7.0	교내	4호	11~13	출석 정지
교육	╨네	5호	14~16	학급 교체
환경 변화	교외	6호	17~21	전학
	╨Ⴏ	7호	17~21	퇴학

[전학·퇴학 조치 결정 시 준수사항]

- 1.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음
- 2.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동일교 재학기간 중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던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음
- 3. 위의 1,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건에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 가능

(나) 조치결정의 방법

- 기본 판단 요소 중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0~5점 척도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는 0~3점 척도로 평가
- 각 항목별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 선택
- 추가 판단 요소로 가중·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중·감경 여부 결정 후 최종 조치 선택
- 학교에서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로 의결하는 경우 총 시간을, 출석정지로 의결하는 경우 총 일수를 함께 결정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의결하거나 부가하는 경우 총 시간도 함께 정하고, 보호자 특별교육 참여시간도 함께 결정

- 교육장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함.
 - ※ 전학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함(「교원지위법」제25조제3항)
- 교육장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 교육장은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함. 이 경우 보호 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함

라)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결정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심의

- 각 당사자의 진술, 문답서 및 진술서, 목격자 진술 또는 진술서, 조사보고서 등 증거에 의하여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결정한다.
- 각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위원회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상인 이라 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조치없음으로 종결 가능하다.

(2) 조치의 결정

(가) 조치결정의 기준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결정의 기준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② 보호자의 반성 정도
- ③ 보호자와 피해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④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⑤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나) 조치결정의 방법

- 기본 판단 요소 중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은 0~5점 척도로, 보호자의 반성 정도 및 보호자와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는 0~3점 척도로 평가
- 각 항목별 총점에 해당하는 조치 선택
- 추가 판단 요소로 가중·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중·감경 여부 결정 후 최종 조치 선택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의결하는 경우 총 시간도 함께 정함

•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구년
매우높음	5	5	5	높음
높음	4	4	4	
보통	3	3	3	보통
낮음	2	2	2	낮음
매우낮음	1	1	1	
없음	0	0	0	없음

구분	보호자 등의 반성 정도	보호자 등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	0	0
보통	1	1
낮음	2	2
없음	3	3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	추가 판단 기준	조치 내용
감경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이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감경
가중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

-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2호 ⇄ 1호
- ※ 제1호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구분	점수	조치 내용
-	0~4	조치 없음
1호	5~1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2호	12~21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②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된 모든 사안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해야 하나요?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에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는 없나요?
- A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 오인(誤認) 신고 ▲ 피해교원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조사·심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안을 종결 처리할 때에는 피해교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교원과 침해학생(보호자) 등 양측의 의사를 서면(서식18)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②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로 사안이 접수된 경우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상담원이 상담내용을 피해교원의 소속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알리고, 소속 학교장은 이후 사안처리단계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 A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과정에서 각 항목별 점수는 각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숙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있나요?
- A 기본 판단 요소의 총점이 4점 이하이거나 기본 판단 요소 총점상 학교에서의 봉사(5~7점)에 해당하나 학생에게 장애가 있어 감경사유가 있는 등 사안이 경미하고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목적상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조치없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감경사유인 "장애"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학생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나요?
- A 학생의 "장애"란 "신체적 기능의 결함이나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 등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라는 뜻에서 넓은 의미의 장애를 의미하며, 반드시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장애가 있는 등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가중·감경할지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가중·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가중·감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장애"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권고전학" 등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조치를 할 수 있나요?
- A 「교원지위법」제25조제2항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의 종 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취지이므로 임의로 여기서 규정한 것 외에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 ②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학생생활기록부에 출결상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에 따른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출석정지와 마찬가지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출결 특기사항 기재 등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안내해 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한 일반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심의 및 제재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A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보호자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하였으며, 그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보호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동일하게 법령에 따라 조사·심의 절차를 거치며,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조치별 적용 기준'참고하도록 합니다.

마) 회의록 작성

- 회의록에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 포함한다.
- 각 위원들의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한다.
- ☑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공개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 A 「교원지위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마. 사안 종결 단계

1) 조치의 통지

-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치의결서(서식8)를 작성하여 해당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한다.
 - 의결서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적시
- 교육장은 위원회 조치 후 14일 이내(「교원지위법」제25조제7항)에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결과통지서(서식9-1, 9-2, 10)를 각 당사자 및 피해교원에게 송부하고, 해당 학교에 결과통지 공문을 발송한다.
- 학교장은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

●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결과 보고 시기는 시·도교육청의 지침, 여건에 따라 정하되,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후속조치

- 당사자가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도록 독려
- 피해교원에게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조치
- 재발방지조치 및 추수지도
- 당사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 지원
- 조치결과에 이의제기 시 불복절차 안내

4)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교육장은 이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도교육감이 과태료 부과

바. 조치에 대한 구제절차

1) 행정심판

가) 개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기관(해당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나) 대상

●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침해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교원지위법」제25조제2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교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청구기간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 ※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송달되기 전에는 당사자가 그 내용을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미리 알게 되어도 청구기간이 진행되지 않음
 - ※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치결정 통보서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일단 수령하였다가 반환한 경우에는 그때 부터 청구기간이 진행됨
- '처분이 있었던 날'이란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여 해당 조치가 성립한 날'을 의미한다.

라) 집행정지 결정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2) 행정소송

가) 개념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나) 대상(「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학생이 원고가 되고(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함) 교육 장이 피고가 된다.

다)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라)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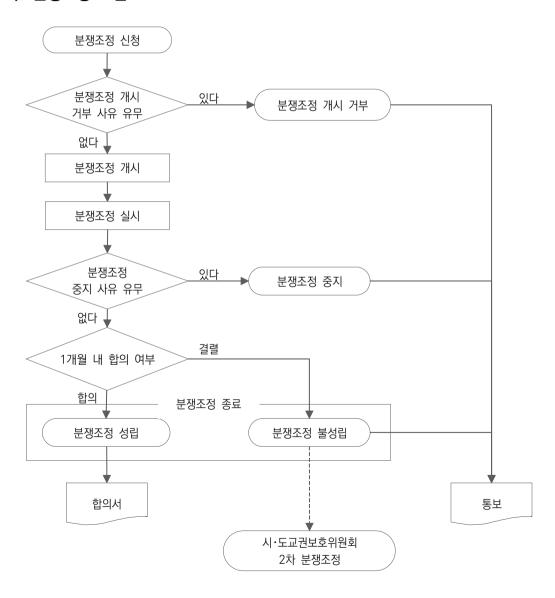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3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목적)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조정자가 되어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 의 장을 마련해 상호 화해 및 합의로 이끄는 절차이다.
- (유의) 분쟁조정은 양당사자의 분쟁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가. 분쟁조정 흐름도



나. 분쟁조정 절차 개요

절 차

세부 사항

분쟁조정 신청 (학교)

- 사안 신고시. 피해교원 분쟁조정 의사 확인(서식1)
- 발생 보고시, 당사자 분쟁조정 신청 여부 확인(서식2)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절차 안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식11)



분쟁조정 개시 (지역교권보

호위원회)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확인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지
- 출석 불능 시 분쟁조정 연기 신청 →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 필요한 경우 분쟁담당자 지정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가능**〉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분쟁의 성질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분쟁조정 실시 (지역교권보 호위원회)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당사자 의견 및 요청사항 청취
- 조정안 제시 등 조정 노력
- 분쟁조정 협의록(서식13) 작성



종결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 (분쟁조정 성립 시)

- 합의서(서식12) 작성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당사자에게 합의서 통보

분쟁조정 • (분쟁조정 불성립 시)

-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분쟁조정 종료 가능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불성립 통보
-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2차 분쟁조정 신청 가능 안내
-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안 권고 가능
- 관할 시·도교육청에 조정결과 보고

52

다. 분쟁조정 절차

1) 분쟁조정의 의의

- 위원회가 조정자가 되어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마련해 화해로 이끄는 절차
-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급적 교육지원청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
- 특히 보호자 등 학생이 아닌 사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적용 가능

2) 분쟁조정절차

- 가) 분쟁조정의 신청
-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나) 분쟁조정의 개시

-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보
-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 기일 재지정

다) 분쟁조정의 개시 거부 및 분쟁조정의 중지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분쟁의 성질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조정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
- 위 사유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 가능
-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

라) 분쟁조정의 실시

-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 가능
- 진술 청취 후 양보·화해·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조정 시도

마) 분쟁조정의 종료

- ①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당사자에게 통보
- 합의는 민사상 화해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합의의 내용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되며 종전의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함

〈합의서의 기재사항〉

-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 3. 조정의 결과

②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조정 종료 가능
- 분쟁조정 종료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
-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위 또는 행위의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 권고 가능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 주의사항〉

- 사안조사 단계에서 당사자의 분쟁조정 의사 확인
-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
- 학생의 경우에도 분쟁조정 가능
- 분쟁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
- 합의사항에는 사과나 화해, 손해배상, 재발방지 약속 등이 가능
- 합의사항은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됨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1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

-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는 교원 및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권침해 신고, 심리 상담·법률지워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이다.
- 주요 업무
-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접수 및 피해교원 관할 교육지원청·소속학교 연계
-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마음건강·법률상담 등 지원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교육활동 보호 법령 및 매뉴얼 등 공통 제도 안내
- 특이민원 등 대응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연계
-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 사항 안내
-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계
- 시도별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 기타 교권 보호와 관련된 시도별 지원 제반 사항

2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가. 보호조치의 유형

● 관할청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 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심리 상담 및 조언
-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1) 심리 상담 및 조언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은 각 시·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 권전담상담사를 통하여 전화 및 유선으로 심리 상담
-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여 심리 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관할청에 치료비 청구 가능
- 공무상 병가
 - 연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 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예규 제166호(2023.10.25.)]

V

-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공무상 요양 승인
 - 교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에 따라 연 180일의 범 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통해 승인 시 요양급여 지급 가능

참고 기간제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교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 병에 걸린 경우

- 1. (기간제 교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1항)
- 2. (사립학교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전보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전보 요청 가능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등)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4) 특별휴가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일 이내 특별휴가 사용 가능

「교원지위법」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83호, (2023.12.11.)]

제8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학교 등)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인 특별휴가의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A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교권보호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기존 결재한 특별휴가를 취소하고 병가나 연가로 정정합니다.

나. 보호조치 비용

- 1) 보호조치 비용 범위
- 심리 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약품 공급 등의 비용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 부담 등)

-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 상담기관에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2) 보호조치 비용 신청 절차

●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하려는 피해교원 또는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보호조치 비용 부담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3) 보호조치 비용의 가해자 부담 원칙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
-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합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
- 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
- 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 부담 등)

-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구상권 행사의 예외

● 보호자 등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합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 부담 등)

-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합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 1.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사법적 조치

가. 형사소송(고소와 고발)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법 등 각종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수사 기관에 이를 고소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 (교육감의 형사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에 고발할 수 있다.

「교원지위법」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이 모욕죄 등 친고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고소권자인 피해자 본인이 고소하여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유효함(「형사소송법」제230 조제1항)
- 14세가 되지 아니한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고소 및 고발의 대상이 아니다.(「형법」제9조)
- 형사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고소인만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나. 민사소송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교원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학교장 통고제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손괴 등 각종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소년법」제4조에서 규정하는 행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교권을 회복하고 해당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절충적인 방법으로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에게 「소년법」상의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 사건으로 심리한다.

- 1. 죄를 범한 소년
-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 (送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 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방법

-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 주거,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의 내용을 서면(통고서)으로 제출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 사무관 등에게 구술로도 가능함
- 원칙적으로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임

● 장점

-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 경우라도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전과로 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징

- 학생의 비행행위에 대한 처벌보다 교육. 치료 및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함
- 학생이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신속한 문제해결을 통해 비행 초기에 선도 효과를 높일 수 있음

4

전북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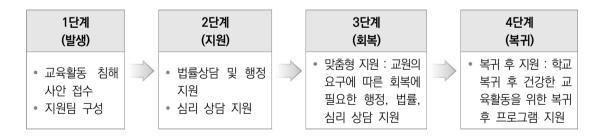
「교원지위법」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 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역할과 기능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치유·회복·복귀 지원
-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법률 자문
- 교육활동 보호 자료 개발
- 교육활동 보호 예방 연수
-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외에 교직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교원의 교육력 회복 지원

나. 단계별 지원 내용



다. 주요 운영 내용

-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지원
- 교육활동 침해 예방 사업 운영
 - 업무담당자,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 의사소통 향상, 대인관계 향상, 교육활동 침해 대처 등 코칭·심리 상담 지원
- 교육활동 관련 법률상담(교권전담변호사 및 법률지원단),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 담·지원 및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상담료 지원 등
-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 운영
- 교원 심리 상담(치유) 지원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피해교원의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교육활동 침해 교원, 교직 스트레스 교원,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부적응 교원 등에 대한 개인 심리 상담 지원
 -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 온·오프라인 운영
 - 치유·회복·복귀·성장에 따른 집단상담 지원
 - 교원 힐링 프로그램 지원

라.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 현황

(2024년 3월 기준)

구분	주소(센터명/누리집)	대표전화번호
한국교육 개발원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 https://forteacher.kedi.re.kr	1899–9876
서울	종로구 송월길48 학교보건진흥원 409호 http://www.sen.go.kr/「교육활동보호센터」	02-399-9093, 9094, 9074(상담사) 02-399-9400(변호사)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77 메디컬시티 10층 https://www.pen.go.kr/「교원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051-862-1122

구분	주소(센터명/누리집)	대표전화번호
대구	달서구 당산로 121 교육연수원 사도관1층 http://www.dge.go.kr/forteacher/「교육권보호센터」	053-231-0540~3, 0547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91번길 71 현영빌딩 4층 http://www.ice.go.kr「교육활동보호센터」	032-550-1781~4
71.X	서구 상무번영로 98 http://forteacher.gen.go.kr 「교원치유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1044 0575
광주	북구 서양로 111 동부교육지원청 http://forteacher.gen.go.kr 「교원치유지원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1644-9575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07-115 https://www.dje.go.kr/eduhealingnew/main.do 「에듀힐링센터(교육 활동보호센터)」	042-865-9361
울산	중구 북부순환도로375 울산광역시교육청 4층 https://www.use.go.kr 「교육활동보호센터」	052-210-5489
세종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 306호 https://www.sje.go.kr/forteacher 「교육활동보호센터」	1522-9575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경기도교육청 https://more.goe.go.kr/eapc 「교육활동보호센터」	1600-8787
강원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http://www.gwe.go.kr/「교육활동보호센터」	033-259-0819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북교육청 http://www.cbe.go.kr「교육활동보호센터」	043-290-2251~8
충남	홍성군 흥북읍 선화로 22 충남교육청 http://www.cne.go.kr 「교권보호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	1588-9331
전북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정여립로 874 http://www.jbe.go.kr/human 「교육활동보호센터」	063-237-0343~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남교육청 https://www.jne.go.kr/human/「교육활동보호센터」	061-260-0531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198-14(남통동)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 본관(1층) http://www.gbe.kr「교육활동보호센터」	054-450-4363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경남교육청 제2청사 2층 https://www.gne.go.kr/forteacher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교육활동 보호센터)」	1811–7679
제주	제주시 문연로 5 제주도교육청(별관 4층) https://www.jje.go.kr/forteacher 「교육활동보호센터」	064-710-0070

5 / 그 밖에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 교원 대상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동학대 관련법에 따른 조사·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판단 여부를 담은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절차 마련

「유아교육법」

-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 해서는「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교원지위법」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 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 지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 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

이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3.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 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 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1) 교육감 의견 제출 방법 및 일정

- ①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안 정보 공유
- ② 교육지원청은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사안 확인
- ③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교육청으로 '교육활동 확인서' 상신
- ④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이 신고사항을 공유받은 날부터 7일 이내⁹⁾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을 서면 제출

[의견 제출 흐름도]



^{9)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2) 정당한 생활지도 판단 참고 기준

- ① 법령과 학칙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유아교육법」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아동학대처벌법」제2조(정의)제3호
- 학칙(유치원규칙) 및 그 외 관련 법령
-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
- ③ 학급 규칙 및 교육주체 간 협약
- ④ 교원-학부모와의 사전 협의 사항 등

나.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교원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의 변호사 등 법률전문 가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지원 실시

「교원지위법」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 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고발, 소송 등)시 기관 차원의 법률 자문 및 법무 지원 제공
- 위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특이 민원 등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고소·고 발 등) 추진
- 관련 부서(기관)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지원 ※ 각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다. 교원보호공제사업

●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 를 확대한 교원 대상 공제사업 운영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 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 용의 지원
-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담보명	보장내용	보장한도	주요 면책사유
배상 책임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민사상 합의금 포함)	1사고당 2억원 한도소 제기전 합의시 1사고당 1억원 한도	• 타법에 따른 공제제도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민형사 소송 비용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 비용(소제기 포함)	심급별 660만원검경수사단계 330만원	• 민사: 고의·중과실 인정 • 형사: 유죄확정
상해치료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비 심리 상담비	• 치료·요양비: 200만원 • 심리 상담: 15회	• 동일사유로 보호조치 지 원을 받은 경우
재산상 피해비용	휴대폰 훼손 등 비용	• 100만원	
위협대처서비스	폭행·상해 등 중대사안시 긴급 경호	· 20일	
분쟁조정	분쟁사안 시 변호사 또는 공제회 담당자 등의 분쟁조정 서비스	• 한도 없음	• 교원의 공적인 업무수행 과 무관한 분쟁

[※] 표준약관은 시·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보장범위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음.

라. 그 외 사안에 관한 대응 방안

●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징계 처분과 같은 불이익 처분 및 부당한 처우, 근무조건, 인사 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문제, 직장 괴롭힘, 갑질 피해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도를 통해 처리 가능

구분	종류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청구	·대상	국·공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국·공립, 사립교원
청구내용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 기타 신상문제 등 여러 고충에 대한 심사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권익 구제	인권침해, 차별행위
결정의 효력		권고	공·사립 모두 기속력 있음	행정기관에 대한 권고
ㅂㅂㅎ	청구 인정	법적인 기속력은 없어 결정	공립은 불복 불가 사립은 소청심사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가능	
불복할 경우 청구 기각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복 절차(행정소송 등) 없음	공립은 행정소송 사립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과 법인 상대 민사소송 가능	-

종류 구분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한	없음	30일 이내	없음
단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시·도교육청)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교육부)	-	-
근거	교육공무원법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¹⁰⁾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개념

• 국·공립학교 교원의 공무를 폭행 또는 협박, 위계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업무를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위계란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유·무형적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¹¹⁾.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공립학교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와 관련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학부모가 사립학교 교무실에 체격이 크고 몸에 문신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들어와 교사들에게 위력을 보여 겁에 질리게 한 뒤 수업 중인 교사를 불러오라고 하는 경우

¹⁰⁾ 이 장의 모든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상황임

¹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도18970 판결 참조

다. 공무방해 사례

공립 A 중학교 B 교사는 학급에서 C 학생과 D 학생 간의 다툼이 있어 이를 지도하였다. C의학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인 피해자로 오인하고, 학교를 찾아와 교무실 문을 걷어차며 'B 나와, XX'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후 B 교사가 수업하고 있는 교실로 찾아가 '내가 너와 D 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하라'며 윽박질렀다.

- 공립학교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는 폭행, 협박,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육활동울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일반적인 폭행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법적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공무원에 대한 것인 이상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일 필요는 없고 물건 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12).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일체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직무집행'은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할수 있는 각종 사무를 행하는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은 직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한다.
- 위 사안에서 C의 학부모는 B교사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발언을 하여 B 교사의 공무인 수업을 방해하였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제11장(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개념

● 무고의 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 고발, 진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제156조).

¹²⁾ 대법원 1981.3.24.선고 81도326 판결, 대법원 1970.5.12.선고 70도561 판결 등 참조

- 신고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신고 내용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13)
- 또한,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된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¹⁴).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자녀가 신체적 학대를 받은 적이 없음을 교내 CCTV로 확인 후에도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경우
- 학부모가 '교사가 촌지를 요구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국민신문고에 거짓으로 민 원을 제기한 경우

다. 사례

공립중학교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교사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같은 반 학생들과 당사자인 학생의 진술을 통해 해당교사가 학생을 때린 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학부모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며학교와 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했다.

● 위 사안에서 보호자는 허위로 밝혀진 사항에 대해 보호자가 징계 등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¹³⁾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 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9.28.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¹⁴⁾ 대법원 2004.1.27.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상해의 개념

● 타인의 신체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수단은 유·무형 / 직·간접 행위를 불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손으로 교원의 뺨을 때려 고막이 찢어진 경우
- 책상 또는 의자를 밀쳐 교원에게 타박상이나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 고함을 지르며 지속적인 폭언을 하여 교원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이 생긴 경우

다. 폭행의 개념

•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힘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며, 몸을 향해 물건을 던져 신체를 폭행하거나,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교원을 직접 때리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라. 교육활동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교원의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경우
-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
-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팔이나 다리를 휘둘러 때리려고 하는 경우
- 교원의 신체에 물건을 던지는 경우

마. 폭행 사례

교사 A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학생 B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B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자 학생 B는 의자를 들어 교사 A를 향해 던지고는 교실을 나가버렸다. 던진 의자가 교사 A를 살짝 비껴가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 폭행죄에서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면, 피해자의 신체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간적으로 근접하면 폭행이 인정¹⁵⁾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와 공간적으로 근접한 상태에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폭행에 해당한다.¹6)
- 위 사안에서 학생 B가 교사 A를 향하여 의자를 던진 것은 폭행 유형으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¹⁵⁾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¹⁶⁾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판결 참조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개념

●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해악의 고지는 실제로 그 내용이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언어는 물론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통한 협박도 가능하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교원에게 집 주소를 알고 있으니 밤길에 쫓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경우
- 교원의 가족 등 제3자를 해코지하겠다는 문자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경우
- 교원의 지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반항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목을 겨누는 경우
-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교문 앞에서 자해하겠다고 소동을 피우는 경우

참고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의 구분

☑

-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 A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진정)을 예고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외관상 권리행사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권리를 남용하여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17)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진정)을 예고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폭언을 수반하여 고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상당한 수단이 아닌 경우 권리의 남용으로 협박에 해당할수 있다.

¹⁷⁾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형법」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이 있다.

가. 명예훼손의 개념

●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 될 수 있다.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진실된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성립된다. 단,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위법성 조각사유).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학생이 다른 학생·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의 몸을 만졌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담임교사의 가정 사를 유포한 경우

참고 명예훼손의 인정 범위



- ☑▶ 교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형사 고소, 민원 제기 행위를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수사절차나 민원 처리 절차에서 그 정보가 담당자 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허위로 형사고소나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로 다뤄질 것이다.

다. 명예훼손 사례

A 중학교 2학년 지필평가 결과에서 C 학생이 수학교과에서 고득점을 하였다. 같은 반의 B 학생은 "수학교사인 D 교사가 C 학생의 사촌이라서, C 학생에게 문제를 미리 빼돌려 주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C 학생이 고득점을 받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반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였다.

- 다수의 사람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교사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B 학생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D 교사의 성적처리에 대하여 사회적인 평판을 훼손하였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 할 수 있다.
- 다만, 명예훼손 행위가 성립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위법성이 배제될 수 있는데, 위 사안에서 B 학생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모욕의 개념

• 다른 사람들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유형은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모욕한 경우에 만 성립한다.

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 '○○놈', '○○년', '○랄한다, ○새끼' 등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
- 교사의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비하하거나,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어 부르고 다니는 경우
- 특정 교사에 대하여 '멍청하다, 함량 미달이다' 등의 비하 발언을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 서 유포하는 경우
- 다수학생이 볼 수 있는 SNS 게시판에 교원을 비하하는 말과 욕설을 올려 유포하는 경우18)

^{18)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형법」의 모욕죄 규정이 적용된다.

바. 모욕 사례

A 초등학교 B 학생은 엉뚱한 말로 수업을 자주 방해하였다. 이상한 소리를 내는 B 학생에게 담임교사 C가 그만하라고 훈계하였고, 화가 난 B는 C 앞에서 "○랄하네. 씨○. ○까. 짱나네"라고 하였다. 이를 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들었다.

이후, B 학생은 "선생님한테 한 말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라며 변명하였고, B 학생의 학부 모도 사춘기 아이의 혼잣말에 담임교사가 예민하게 군다며 되려 항의하였다.

- 형법상 모욕은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혼잣말로 한 발언이라도 타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
- 위 사안에서 B학생이 발언한 부분은 교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언 대상이 교원이라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듣고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전파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이에 이르지 않고, 상대방에게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뿐이라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으로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는 볼 수 없다.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개념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숨기거 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며 책상, 창문, TV 등 학교의 기물을 망가뜨리는 경우
- 교사의 출석부나 교무수첩의 일부나 전부를 찢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 게 한 경우
- 교사가 작성한 컴퓨터 파일을 일부러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가. 개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는 성폭력범죄 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배포, 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배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폭행 또는 협박으로19)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경우 (강제추행)
-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교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경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학생이 수업 중 교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
- 학생이 교원의 사진에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SNS 등으로 게시한 경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 사진, 음란한 내용의 글 등을 교사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다. 사례

수사기관에서 교사 A에게 연락이 왔다.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100여 건이 넘는 불법 사진과 영상을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4개월 넘게 역할을 조직적으로 나눠 교사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교사가 10명이 넘었다.

이 사안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 되자 일부 보호자는 촬영에 가담하지 않았고 영상을 보거나 갖고만 있었던 학생도 함께 심의대상이 되었다며 부당하다며 소리를 높였다.

●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 행위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그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시청하거나 이를 저장·소지하는 것 역시 위법률상 성폭력범죄 행위이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¹⁹⁾ 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또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가 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 3182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가. 개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불법정보 유통 행위란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 등)을 통하여 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교원을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교원이 학생들을 차별하고,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한다는 허위사실을 작성하는 경우
- 원격수업 중 음란한 음향을 틀어 교원과 수업 참여 중인 학생들이 듣게 하는 경우
-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는 경우

다. 사례1

C학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A 유치원에 다니면서 지저분한 놀이환경으로 인하여 피부질환을 얻었다."며 담임인 B 교사와 유치원에 거액의 진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했다. A 유치원은 주기적으로 전문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유치원 생활로 피부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면 안전공제회를 통해 처리하겠으니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C 학생의 학부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지역 맘카페에 "A 유치원과 B 교사가 아이가 피부질환으로 힘들어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행위에 해당한다.
- 위 사안에서 C 학생의 학부모는 지역의 맘카페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B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맘카페에 글을 올린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여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C 학생의 학부모는 진단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거액의 치료비와 위자료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글을 올린 주요한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라. 사례2

A 학생의 학부모는 B 교사가 A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과정에 불만을 품고, '당신도 교사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내 자식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나'라는 문자를 퇴근시간 이후 한 달 여간 수 십 여건 반복적으로 보냈다.

또한, 문자에 답을 하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 위 사안에서 B 교사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A 학생의 학부모의 행위는 불법정보유통행위에 해당하며,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 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가. 개념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에 침해유형으로 규정된 「형법」,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범죄 행위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중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상황과 형사적 문제에 대응하기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예를 들어, 교육 환경에서의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형법상 강요, 스토킹 행위, 불법 녹음, 악의적인 교직원의 개인정보의 유출 등과 같이 위반 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 이 규정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그에 맞춰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적 공백을 메워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조항이므로, 다른 유형의 교육활동 침 해행위에 준하는 사안에 적용하여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교육활동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학생이 담임교사의 거주 주소를 알아낸 뒤, 불안감을 느끼도록 쫓아다니는 경우
- 학부모가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들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 교원의 동의 없이 담임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제공하여 학부모가 생활지도에 대한 항의 를 직접 개인 연락처로 하게 하는 경우

다. 사례

A 초등학교 학부모 B는 녹음기를 학생의 가방에 숨겨 수업 중 C 교사의 말을 녹음하였다. 그리고는 C 교사에게 연락하여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이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 "아이에게 말을 왜 안했냐"라고 항의하였다. C 교사는 수업 중 음성을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학부모 B는 녹음하면 안 되는 근거가 뭐냐며 녹음을 멈추지 않았다. 학부모 B의 계속된 녹음과 문제 제기로 인하여 C 교사는 학생 지도가 어려워졌다.

-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 교원의 음성을 교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교원의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20)이자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이며, 학부모는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부모가 무단으로 이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참고 2024.1.11. 2020도1538 대법원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한다.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학교 교사의 교실 내 수업 중 발언은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으로,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수업시간 중 발언의 상대방, 즉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는다.

²⁰⁾ 음성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가. 개념

• 학교 운영에 대한 단순한 정보 요구나 교육과정, 수업, 평가 등에 대한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를 넘어서,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학부모가 '담임교사가 우리 아이를 미워한다'라며 반복적인 유사 민원을 제기한 경우
- 학부모가 '오늘 우리 아이 학교생활이 궁금하다'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담임교사에게 퇴근 이후 전화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힘들어 하니 '지필고사 시험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쉽게 내라'등 평가에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 학부모가 학생지도에 불만을 품고 담임을 교체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21)

다. 사례

A 초등학교 C 학생은 수업 중 답답하다며 복도로 뛰쳐나갔다. B 교사는 C 학생의 안전이 우려되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따라 나갔고 B 교사를 따돌리려던 C 학생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C 학생의 학부모는 '선생님이 무섭게 쫓아와서 우리 아이가 넘어졌다. 아이가 쫓아오는 트라우마에 시달려 심리치료를 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는 아이에 대하여 아무런 지도도 하지 말라."며학교와 B 교사에게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 위 사안에서 C 학생의 학부모는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 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²¹⁾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참조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가. 개념

● 교사의 직무 범위나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 등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원하는 특정 문구를 포함하여 변경, 수정 작성하도 록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 학부모가 아이의 취향에 맞는 급식메뉴를 별도로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항의한 경우
- 학부모가 자녀의 태만으로 인한 잦은 지각 및 결석을 병결로 처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다. 사례

A 초등학교 B 학생이 복도에서 넘어져 팔에 가벼운 찰과상이 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C 담임 교사는 B 학생을 바로 보건실에 인솔하여 D 보건교사로부터 상처를 치료받게 하고, B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하였다. B 학생의 학부모는 '지금 바로 아이를 대학병원 성형외과로 데려가 달라'고 요구하였고 C, D 교사가 '치료는 잘 끝냈다. 수업을 해야 해서 지금 데려가기는 어렵다.'고 하자 '흉터가 남으면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쓰라. 쓰지 않으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다. 한편 B 학생의 학부모는 학교안전공제회로 보상을 받았음에도 '향후에도 B 학생의 치료비가 계속 발생하고, 우리도 B 학생의 상태가 너무 염려되어 일을 하지 못하였으나,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일실수입비를 달라'라며 C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위 사안에서 B 학생이 학교에서 넘어져 상처를 입었을 때, C 담임교사, D 보건교사는 적절한 응급처치, 보호자에의 통보 등의 절차를 따랐다. 그럼에도 보호자는 교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인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데리고 갈 것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자 흉터가 남으면 성형수술을 해주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 및 정신적 손해배상과 일실수 입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교원의 법적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본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가. 개념

-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²²).
- 이와 같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신체적 성희롱 : 동의 없이 교원의 신체에 접촉²³⁾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교원의 몸에 스치거나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 신체 접촉 강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는 경우 (교원에게 자기야, 누나/오빠 사귀자, 섹시한데, (성적인 신체부위가) 커요/작아요 등의 말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²²⁾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고

^{23) (}비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행위(강제추행)이므로(각주 14. 참조)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 제2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성폭력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시각적 성희롱 : 시각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림이나 문자를 형상화하 거나 보이는 경우 (교원이 볼 수 있도록 교원의 동선에 음란한 사진을 두는 행위)

다. 사례

고등학교 2학년 B 학생(남)은 교실에서 수업을 준비하는 신규 A 교원(여)에게 다가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 야한 거 보여드릴게요."라고 2차례 말한 후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가슴까지 풀었다.

- 위 사안에서는 수업 중에 교실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선생님이 그 의사와 상관없이 학생의 문제 행동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으로, 학생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교원에 대한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행위로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다만, 성희롱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행위'와 구별되므로 교육부 고시에 따른 전학 또는 퇴학 조치는 제한될 것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가. 개념

•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수업방해 행위가 다변화·복잡화되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023. 3. 23. 개정)에 새롭게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이다.

• 이는 학생의 행동이 단순히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 하고, 교사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행 위를 의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교사의 반복된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업 중에 친구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교실 을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거는 등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언동을 하는 경우
- 수업 중 옆자리 학생과 떠들며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가 지도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사의 말과 행동을 따라 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다. 사례

A 초등학교 6학년 B 학생은 수업 활동과 무관하게 돌아다니고 자리에 앉으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 C 학생은 수업에 관심이 없고,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면 일부러 바닥에 드러누워서는 노래를 부른다. 교사가 수차례 지도하였음에도 B, C 학생이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아, 교사는 B와 C 학생을 지도하느라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없다.

-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 자체는 교원의 교육적 지도 대상이므로 이에 대한 학생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초·중등교육법」및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모습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 이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 (목적)에서 비롯된 학생의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 위 사안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여러 차례 지도하였음에도 학생들의 의도적인 수업 방해가 계속되어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가. 개념

●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원격수업 중인 교사의 일정 발언만을 녹음한 후 단체채팅방에 올린 경우
-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다른 사진과 합성한 뒤 SNS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다. 사례

A 중학교 B 학생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찍은 사진에서 교원의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캡쳐하여 다수 학생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올리며 교원을 희화화하는 별명을 올렸다. 이후 C 학생이 교원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수영복 입은 사진과 합성하여 다시 단체채팅방에 올렸다.

• 위 사안에서 B 학생의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모습을 촬영하여 무단으로 SNS에 배포한 행위와 C 학생의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모습을 합성하여 무단으로 SNS에 배포한 행위는 모두 본 유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



-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시나리오(예시)
-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나리오(예시)
-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
- 4. 각종 서식
- 5.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 시나리오(예시)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전	회의 자료 준	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간 사) (위원장) (간 사) (위원장)	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학년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과반수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통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목적과 규정에 따라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오늘 심의할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번호 20〇〇-〇〇, A교사와 B학생이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 • 회피 안내	(위원장) (위원들)	위원의 제착·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착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착 사유에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주의 사항 안내	(위원장)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중 욕설, 폭언, 폭행 등을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진행과정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녹취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안 조사 보고	(위원장) (간 사)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학교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B학생이 수업 중이던 A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C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생의 진술이 이루어졌 습니다. 관련 증거로 B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간사) A교사	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와 B학생은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하 으며, B학생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
	(간 사)	양측 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의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쟁점 사항 확인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원치 않으므로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 사안은 당사자의 주장 중 상반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교육활동 침해행위 여부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파악으로 요약됩니다.
질의 응답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음으로 피해교원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해당 교원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던 피해교원 입장〉
	(위원장) (피해교원)	본 사안으로 선생님께서 많이 놀라시고 상심이 크셨을 것이라 생각하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절차라 협조를 부탁드리며, 선생님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입니다.
	(위원장)	지는 ○○○합니다.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위원장)	다음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회가진행되는 동안 욕설, 폭언, 폭행을 할 경우에는 퇴실 조치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의참석자 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교원 진술	(위원장)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사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생님께서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안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질문 또는 필요한 발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
	- 침해행위 - 기본 판단 - 부가적 판	및 확인 내용 사실 확인(특히, 학생 및 보호자의 주장과 다른 경우) 한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한단요소(임신, 장애 여부)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위원 동의) 선생님께서는 이 사안과 관련한 요구 사항 등을 포함하여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교원) (위원장)	(※ 관련 학생에 대한 의견 및 보호조치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진술) 네. 성실히 응답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피해교원 퇴장〉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측의 진술을 듣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께서는 관련 학생과 보호자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는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입장〉
	(위원장) (학 생)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입니다.
	(국 8) (보호자)	저는 ○○○ 학생의 아버지/어머니 ○○○입니다.
	(위원장) (위원장)	(기피신청 안내, 주의사항 안내) 다음은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도 관련 내용을 잘 듣고
	(간 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사안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 학생과 보호자는 간사가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십시오.
관련자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
진술	(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보호자께 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 - 기본 판단 - 부가적 판	및 확인 내용 사실 확인(특히, 피해교원과 주장이 다른 경우) 한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정도) 한단요소(장애 여부) 선도·교육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	마지막으로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마지막 진술)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 학생과 보호자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서면으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청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련 학생 및 보호자 퇴장)
	(위원장)	지금까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먼저, 양측의 다툼없는 사실~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사실 심의		(위원들 상호간 논의) 다음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사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논의한 양측의 다툼 없는 사실, 기제출한 증거자료 및 오늘 청취한 진술자료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원들 상호간 논의)
	(위원장)	양측의 다툼 없는 사실 및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사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인정되는 사실을~(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어서 인정되는 사실 관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토록 하겠습 니다.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체다 NOS 출성의의 ○며 즉 ○며이 참성으로 「교의되의법, 제10조 ○○에 따르
	(위원장)	해당 사안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교원지위법」제19조 ○○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절차	세부 진행 발언							
= 1	■ 기본 판단							
	(위원장)	다음으로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는 '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자료 제공)						
	(위원장) 먼저 기본 판단요소 중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는 께서는 '심각성' 정도에 대한 점수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각성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점수 의결〉						
	(위원장)	침해행위 심각성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이하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 판단 요소 심의〉						
	(위원장)	다음으로 '침해행위 지속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행위 고의성'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침해 학생 반성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회복 정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관련 학생 조치	(위원장)	그럼 기본 판단요소에 대한 심의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심각성 3점, 지속성 3점, 고의성 3점, 침해 학생 반성 정도 1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 1점, 총 11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에 따르면 제4호 출석정지에 해당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 추가 판단	요소 심의						
	(위원장)	다음으로 추가 판단 요소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 1 단계 감경이 가능하며,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단계 가중이 가능 합니다.						
	`	:가 판단 요소와 관련된 사실 보고) 3 사유 검토 및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경·가중 여부 의결)						
	(위원장)	본 사안의 경우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그대로 출석정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들) (위원장)	없습니다. 출석정지로 의결한 경우 출석정지 일수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정지 일=	수에 관하여 위원 상호 의견 개진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정지 일수 의결〉						
	(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일수는 5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위원장)	다음으로 부가조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학생 선도를 위해 부가적으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가조치 여부 및 시간 의결〉					
학생 부가 조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부가조치 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시간도 함께 의결하며, 보호자의 참여시간도 의결함					
소시 여부 심의	시간도 함	1호), 학급교체(5호), 전학(6호) 조치 시 반드시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께 의결해야 함 경우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					
	(위원장)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시간을 부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관련 학생	(위원장) 위원님들의 심의의결 내용을 종합한 결과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5일 및 역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하여는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0 위원님 계십니까?						
조치 최종	(위원들)	없습니다.					
의결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 ○○○에 대하여 출석정지 5일 및 특별교육 ○시간으로, 보호자에 대해 특별교육 ○시간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위원장)	지금부터 피해교원에게 추가로 필요한 보호조치에 관한 권고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는 하	당 학교장이 기 실시한 보호조치와 추가 가능한 보호조치 유형 설명)					
피해	(위원 1)	피해교원 ○○○은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심리 상담을 지원해 심리적 안 정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원	〈위원	!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 보호조치 권고안 의결〉					
보호 조치 고고	(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에 따라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로 심리 상담 지원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권고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피해교원 ○○○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는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보호조치 내용 낭독 : 피해교원 ○○○에 대해 추가로 심리 상담 지원을 권고한다.)					
		(의사봉)					
폐회 선언	(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차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시나리오(예시)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시작 전	회의 자료 준	비 및 출석위원 확인
개회 선언	(간 사) (위원장) (간 사) (위원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간사 ○○○입니다. 지금부터 ○○ ○○학년도 제○차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명 중 ○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명 중 과반수인 ○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육지원청 제○회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교원지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목적과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	(위원장)	오늘 조정할 안건은 사안번호 20○○-○○, A교사와 B학부모가 관련된 사안입니다.
제척 · 회피 안내	(위원장) (위원들)	위원의 제척·회피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6조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또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해당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의할 사안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피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번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안 조사 보고	(간 사)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월 ○일 ○○학교 ○○에서 발생하였습니다. C학생의 아버지/어머니인 B학부모가 수업 중이던 A교사에게 "○○ ○○"이라고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둘러 A교사의 허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 월 ○일 해당 교원 및 목격자인 D학생과 E교사의 진술이 이루어졌고, ○월 ○일 B학 생의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증거로 B교사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되었습니다. (※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가 있는 경우 요약 보고)
	(간사) A교사오	이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라 B학생은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한 점에서 주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A교사는 ~~라고 주장 있으며, B학생은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관련 증거로 ~~이 제출되었습니다.
	(간 사)	피해교원이 ○월 ○일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B 학부모도 분쟁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질의 응답	(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간사 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피해교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므로 먼저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께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대기 장소에 있던 피해교원과 학부모 입장〉
	(위원장) (피해교원) (위원장) (학부모)	신청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입니다. 피신청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입니다.
분쟁 조정	(위원장)	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입니다. 양당사자 모두 분쟁조정절차를 원하신 만큼 마음을 열고 미래지향적 조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피신청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위원 중에서 이번 심의와 관련해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기피신청 할 위원이 있습니까?
	(피해교원) (위원장) (학부모)	없습니다. 피신청인은 기피신청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 기피신청	성이 있는 경우 기피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위원장)	이번 분쟁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및 요청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께서 의견 및 요청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교원)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가 크고, 재발이 우려됩니다. 보호자께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해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	이번 일에는 학부모에 대한 교사의 잘못된 상담방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방식을 개선해 주시고, 이번 일로 학생이 앞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지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쟁 조정	(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호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피해교원, 학부모 동의〉
성립	(위원장)	이로써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양당사자가 동의한 조정안에 대하여 분쟁조정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겠습니다.
		〈분쟁조정 합의서 작성 및 서명·날인〉
	(위원장)	양 당사자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마음을 확인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		세부 진행 발언
	(위원장)	과거의 문제보다는 관계회복 및 장래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호수용을 전제로 학부모님께서는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양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없으신가요?
	(2121-1)	〈피해교원, 학부모 부동의〉
	(위원장)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어 조정이 성립하지 못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은 다시 조정을 원할 경우 ○○시·도교권보호 위원회에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 당사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피해교원과 학부모 퇴장〉
분쟁 조정	(위원장)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성립	(위원1) (위원2)	학부모님께는 선생님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선생님께서는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조정안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동의합니다.
	(112=)	〈위원 상호 의견 개진 후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권고안 의결〉
	(위원장)	위원님들 간 논의에 따라 조정안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조정안은 출석위원 ○명 중 ○명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정권고안 내용 낭독 : 학부모 ○○는 교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치료비 ○○○원을 지급하고, 교사 ○○은 상담방식을 개선하고, 향후 학생이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의사봉)
	(위원장)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 중 알게 된 당사자의 사생활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학년도 제○차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안)24)

○○교육지원청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학부모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5. 해당 교육지원청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²⁴⁾ 본 규정은 예시로서, 관련 법령과 교육부 지침,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 (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 사유가 발생 시 21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에게 출석 통지를 해야한다.
- 제6조 (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의 소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조제2항제 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③ 각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 ④ 각 소위원회의 재적인원은 소위원회별로 다를 수 있다.
 - ⑤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 ⑥ 교육장은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중에서 소위원회별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운영이 가능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소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 **제7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2항제 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하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발언의 요지, 결정사항, 표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심의·의결)

- ① 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시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학교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기한 내에 위원회를 개최한 후, 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심의·의 결하여야 한다.
-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조치 사항을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14일이내에 해당 조치를 결정한다.
 - ② 교육장은 조치 결정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결과 통지서를 각 당사자 및 피해교원에게 송부하고, 해당 학교에 결과통지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가 소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사항의 위임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와 동일하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과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9조를 준용한다.
- ⑥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학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12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기타) 본 규정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내부결재가 있은 때(2024. 3.)로부터 시행한다.

4 각종 서식

- 〈서식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 〈서식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 〈서식 3〉 피신청인(학생, 보호자 등) 의견서
- 〈서식 4〉 참고인 진술서
- 〈서식 5〉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 〈서식 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 〈서식 7〉 제○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예시)
- 〈서식 8〉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 〈서식 9-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학생용)
- 〈서식 9-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보호자용)
- 〈서식 10〉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교원용)
- 〈서식 1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 〈서식 12〉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 〈서식 13〉 분쟁조정 합의서
- 〈서식 14〉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협의록
- 〈서식 1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대장
- 〈서식 16〉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 〈서식 17〉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 〈서식 18〉 사안 종결 확인서
- 〈서식 19〉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 〈서식 20〉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
- 〈서식 21〉 특별교육 안내문
- 〈서식 22〉 심리치료 안내문
- 〈서식 23〉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 〈서식 24〉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
- 〈서식 25〉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사고발 요청서
- **〈서식 26〉** 교원 치유(상담 및 진료) 신청서
- 〈서식 27〉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 의뢰서
- 〈서식 28〉 교원치유프로그램 상담 지원 기관(53개 기관)
- 〈서식 29〉 교원치유프로그램 진료 지원 기관(73개 기관)

> [서식 1] 신고자 → 학교장

접수번호		접수일			
			-		
	소속				
신고인	성명				
	연락처				
	기타				
	성명				
#I.I.301	신고인과의 관계		([] 학생 [] 보호	
피신고인	연락처				
	기타				
사안 내용	(별지 사용 가능)				
피해교원 요청사항					
목격자 (다수인 경우 모두 기재)	[]유 []무	성명 관계			
입증자료(첨부)					
분쟁조정 신청		[]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위와 같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신	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교장	귀중, ○○교육지·	워청교유장 귀중			(10 ±L L)
	110, 00— 1 1				
첨부서류	신고 내용을 뒷받침	함하는 증거서류나 중	5거물		
		처리 절차			
신고	접수 및 사안발생 보고	→ 사안조사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처분 통보
신고인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교육 지원청

▶ [서식 2] 학교 → 교육지원청 →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작성일자 월 일 20 년 작성자 소속/직위/성명 [] 공립 [] 사립 [] 기타 소속 성명 피해 연락처 교원 □ 남 ПФ □ 특수교사 여부 기본정보 □ 정규교원 □ 기간제교원 학생 성명 학년/반 관련자 보호자 성명 연락처 일 시 년 월 일 시 분경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사안 내용 사안 개요 (별지 사용 가능) • 2024, 3, 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 A학생이 책상 밑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고 지 피해교원 주장 적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자 및 근거 학생이 "아 XX"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음. • 피해교원 문답서, 진단서 제출됨. •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교 관련학생 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교 (또는 보호자) 사를 밀친 것이고 욕설은 하지 않았음. 쟁점사안 주장 및 근거 • 관련 학생 문답서 제출됨. • 피해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임.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도 지 보호자 주장 및 도하겠음. 근거 • 학부모 문답서 제출됨.) • 목격자 □ 무 □ 유 (성명 : 관계 : 목격자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기록 등 (참고인) 주장 • 목격자 진술 내용 및 근거

기타 입증자료 (별도첨부)		
교육 활동 침해 유형	[] 공무방해 [] 무고 [] 상해·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업무방해 [] 소괴 [] 성폭력범죄 [] 불법정보 유통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 성희롱 [] 반복적·부당한 간섭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피해교원 보호조치	(피해교원에게 실시한 보 (예) 특별휴가 0일, 공무성	호조치 내용 기재) 방병가 0일, 심리 상담 지원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	미분리 사유	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학생(또는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분쟁조정 선	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신청인 : 피신청인:
기타시	나하 신고	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교원 아동학대 등) 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등) 타
	작성자: 직(교사) 검토자: 직(교감) 확인 및 보고자: 직(교	성명 : (서명) 성명 : (서명) 당) 성명 : [직인]

> [서식 3] 피신청인 → 학교 → 교육지원청

	3	피신청인(학생, 보	호자 등)	의견서	ने
	성 명		소 속	00))) 학교
①피신청인	연락처		신청인과의 관	계	
	주 소				
②사안 또는 절차에 대한 의견					
③목격자(참고인)유무		□ 무 □ 유 (성명 : ※ 목격자가 다수인 경우 5)	
④기타입증자료(첨부)					
⑤분쟁조정절차 신청		신청함 🏻		신청하지 않음 🗆	
⑥관련 학생의 보호자 성명				연락처	
⑦작성일				작성자	(서명)

▶ [서식 4] 참고인 → 학교 → 교육지원청

		참고인	진술서	
	성 명		소 속	0000 학교
①참고인	연락처		신청인(피신청인) 과의 관계	
	주 소			
②사안 또는 걸 대한 목격한				
③기타입증자료	로(첨부)			
④작성일			작	성자 (서명)

▶ [서식 5]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직위/성명
-1-11	소속			[] 공립	[] 人	네	[] 7	기타
피해 교원	성명								
же	연락처								
기러디	학생	성명				ō	¦년/빈		
관련자	보호자	성명				Ç	견락처		
	일 시	년	월		일	시	분	경	
	장 소	(011)) <i>○학교</i>	1학	<u> 키반</u>	교실 안			
사안 내용	사안 개요	(별지 사용 가	_ 5)						
	피해교원 주장·근거 확인 결과	밑으로 휴대신 하였으나 이	전화를 시 에 불응하 ("이라고	/용하_ 하고 겨 ' 소리	고 있어 비속 휴나 '를 지르	수업 중 대전화를 르며 양손	휴대전 사용하 으로 1	(화를 1여 이	업 중 A학생이 책상 쓰면 안 된다고 지적 를 제지하려 하자 학 '어깨를 밀쳤음.
쟁점사안	관련학생 주장·근거 확인 결과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B교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야단을 치자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교사를 말친 것이고 욕설은 하지 않았음. 관련 학생 문답서 또는 의견서 제출됨. 							
	보호자 주장·근거 확인 결과	 피해교사에게 미안한 마음임.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가정에서도 지도 하겠음. 학부모 문답서 또는 의견서 제출됨. 							
	목격자 (참고인) 주장·근거 확인 결과	목격자 □※ 목격자가목격자 진술	다수인 -				관계 :)
기타 입증자료 (별도첨부)									

교육 활동 침해 유형	[] 공무방해 [] 무고 [] 상해·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업무방해 [] 손괴 [] 성폭력범죄 [] 불법정보 유통행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 성희롱 [] 반복적·부당한 간섭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 []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음·합성하여 무단배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	(※ 관련 증거에 따라 조사내용을 육하원칙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재) • 학생은 당시 휴대전화 사용사실 및 욕설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당시 옆자리에 있던 ⟨◇〉 학생이 당시 A학생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 □□, △△ 학생이 당시 A학생이 B교사에게 "씨○"이라고 욕을 하였고 양손으로 교사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음. • A학생은 당시 휴대전화 사용사실 및 욕설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B교사의 어깨를 밀친자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교원의 진술과 목격 학생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함. • 따라서 2024. 3. 11. 10:00 경 1학년 1반 교실에서 A학생이 B교사의 어깨를 밀치고 "사이"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임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 고의성	 피해교원의 부상 정도는 가벼운 타박상(전치 2주)으로 경미함. 해당 학생의 경우 이전에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주의를 준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음. 해당 학생의 경우 과거 교사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음. 					
조치의	학생(또는 보호자)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휴대전화 사용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피해교원에게 반감을 갖고 있으며 교사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음. 					
필요성에 관한 사실	학생(또는 보호자)과 피해교원과의 관계회복정도	 학부모가 피해교원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였음. 학생이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과할 의사가 없어 피해교원은 학생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피해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학생(또는 보호자)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피해교원 보호조치	(피해교원에게 실시한 보호조치 내용 기재) (예) 특별휴가 0일, 공무상병가 0일, 심리 상담 지원						
기타사항	[] 형사고소 (피해교원이 학생 고소 또는 보호자가 피해교원 아동학대 신고 등) [] 민사소송 (피해교원이 보호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등) [] 기 타						

▶ [서식 6] 교육지원청 → 신청인·피신청인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성 명	학 생	소 속	
Ģ	보호자 - 락 처	직 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안내	
일	A.I.	년 월 일(요일) 시 분	
	^		
장	소		
안	건 교육 [:]	활동 침해 사안 조정 절차 또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	
사안의	요지 교육 [:]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일시, 장소, 내용 등	
참고 /	바 2. 출 3. 화 ○	의사항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전화 : 000-0000)로 연락하. 랍니다. 석하실 때는 안내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 각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의견서(별도 양식 [*])를 작성 ○○교육지원청으로 00월 00일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 별도 양식: 서식 활용	니다. 하여
		년 월 일 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서식 7]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예시)

*	사안번호:○○교육지원청	2024-00
	ハー・コン・ハノルサイにつ	2024 ()

	–									
일시			년	월	일(요일	일)	시	분		
장소										
심의위원	위원	000 000 000	위원 위원	000 000 000						
위원 정수:	명	참	넉 위원:	5	Ħ		불참 위	리원:	명	
신청인(피해교	원)	000					참석 🗆		불참 🗆	
피신청인(학생, 보호	화 등)	000					참석 🗆		불참 🗆	
피신청인의 보호	호자	0000	학생과의	관계)			참석 🗆		불참 🗆	

- 회 순
- 1) 개회
- 2) 당사자 참석 여부 확인 및 성원 보고
- 3)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 4) 교권보호위원회 개요 안내-목적, 진행절차, 주의사항 전달
- 5) 사안보고
- 6) 관련 당사자 진술(피해교원 확인 및 질의응답→침해학생 또는 침해 학부모 확인 및 질의응답)
- 7) 사안 혐의 및 조치 결정
- 8) 폐회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참석위원 명단]

[개회 및 인사]

간사 :

[위원 제척 등 사유 확인]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전달]

위원장 :

[간사의 사안 요지 설명]

[당사자(피해 교원) 의견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당사자(침해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또는 침해 보호자 청취 및 문답]

위원장: (신분 확인)/ 기피 신청 여부 확인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 각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간시는 위원들에게 각 당시자에게 시안의 요지 및 위원의 회의 일정을 시전에 충분히 고지한 사실과 당시자가 불출석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실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위원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사안 협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 여부 심의

위원장: 제출된 자료와 분쟁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참고하여 본 사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 학생 또는 침해보호자 조치 사항 심의]

- 1. 기본 판단 요소- 심의 각 판단 요소에 대한 합의 점수 도출/ 합의가 안될 경우 출석위원 괴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각 위원 점수의 합산 후 평균 점수 내지 않음.
- 2. 추가 판단 요소 심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 내용의 가중, 감경 의결

[피해 교원 보호조치 권고 사항 논의]

[침해 학생 조치 또는 침해보호자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

[폐회]

위원장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년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치 결정 및 의결 내용]

· 침해학생 또는 침해보호자 조치

연번	성명 (학년/반)	교육활동 침해유형	조치결정 (관계법령)	표결내용
1	000			만장일치
2				찬성(7), 반대(2)

[피해교원 보호조치 권고 내용]

피해교원	권고 사항	표결내용
000		

[서식 8]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의결서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인적사항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호) 학생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시간(「교원지위법」제25조제2항제3호) 학생의 조치사항 특별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항) 보호자 보호자 등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교원지위법」제26조제2항제1호) 별지 기재와 같음 이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유

- 1. 위 학생은 00학교 0학년 0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2. 학생에 대한 00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의 심의요청 사유를 보면,
 학생이 2024. 3. 1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사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쳤다는 것이다.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9조1호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3. 이에 대하여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 4. 피해교사 진술서, 목격학생 진술서의 각 기재,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건보고서, 학생과 피해교사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이 2024. 3. 11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사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항상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조치의 양정에 있어서 피해교사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학생이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교사에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교사도 학생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생활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치사항과 같이 '학교내 봉사 8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2시간'으로 의결한다.

▶ [서식 9-1]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학생용)

	소속 학교	학년 반	성명
조치사항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제13 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시간(「교 교육 4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제5	7원지위법」제25조제2항제3호)
조치결정의 이유	이 과제 제출을 요구 고 큰 소리로 욕설을 위와 같은 행위는 교 활동 보호를 위한 특	111. O시 O분 경 O학년 O반 교실이 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기습; 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델 별법」 제19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U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 을 2회 친 사실이 인정되며, 학생의 목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유의사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제25조제10항에 따라「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9-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보호자 등용)

	소속	성명	비고(자녀 소속, 성명 등)						
조치사항 <i>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교원지위법」제26조제2항제1호)</i>									
조치결정의 이유	가 "치가운 우유를 해 달라"고 반복 학부모의 위와 같 하는 행위로 교원 교육활동 침해행동	를 마시면 아이가 배탈이 날 수 있으니 적으로 전화연락 및 문제 메시지를 요 은 행위는 교육활동중인 교원에게 법	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 한 특별법; 제19조 2호 나목에 따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유의사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제25조제10항에 따라「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시·도 행정심판위 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0]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교원용)

피해교원		소속	성명	직위					
관련자		소속	성명	직위					
	학생		8시간(「교원지위법」 제25조저 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4시간(
관련자 조치 결과	학생의 보호자	· 트ց ::/윤 - 4시/((' ::/워시)위법 : 세25소세5항)							
	보호자등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제1호)								
피해교원 보호 권고 조치	심리상담	[†] 및 조언(교원지위법	법」제20조제1항제1호)						
학생00이 2024. 3. 111. 0시 0분 경 0학년 0반 교실에서 국어수업 중이던 피해교사 000이 과제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0000", "00 000"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기슴을 2회 친 사실이 인정 되며, 학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으로서 「교원의 지위 항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날짜,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내용이 긴 경우 별지 첨부 가능)									

'교원의 시위 항상 및 교육활동 모오늘 위한 특별법」제18소, 제19소, 제25소, 제26소 등에 따라 위외 같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인

▶ [서식 11] 교육지원청 →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소속 [] 공립 [] 사립 [] 기타 피해 성명 교원 연락처 기본 □ 남 ПФ □ 특수교사 여부 정보 기본 정보 □ 정규교원 □ 기간제교원 관련자 성명 [] 학생 [] 보호자 [] 기타 일 시 녉 일 시 사안 장 소 (예) ○○학교 1학년 1반 교실 안 내용 구체적 (별지 사용 가능) 행위 내용 [] 공무방해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 [] 무고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 [] 상해·폭행 [] 성희롱] 협박 교육] 반복적·부당한 간섭] 명예훼손 활동 []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업무방해 교육활동 방해 침해 [] 손괴 [] 영상·화상·음성 등 촬영·녹음·합성하여 유형 [] 성폭력범죄 무단배포 [] 불법정보 유통행위 [] 기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 교육활동 침해행위 아님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수 월 재적 명 // 출석 개최일시 [] 개시 거부/중지 | [] 분쟁조정 거부 [] 고소·소송제기 등 [] 기타 [] 조정 성립 분쟁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구분 성명 직위 조치 결정 사항 피해교원 조치 사항 관련 학생 기타 조치사항 통보 일() 서면으로 등기우편 발송 □ 형사고소 (고소인: 예시 - *학생(보호자)*) 기타사항 □ 민사소송 (원고: 예시 - *학생(보호자)*) □기 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재조정 신청 등) 작성자: 직(장학사) (서명) 성명: 보고자: 직(교육장) [직인] 성명 :

▶ [서식 1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소속 성명 신청인 연락처 기타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 학생 [] 보호자 [] 교원 [] 기타) 피신청인 연락처 기타 신청취지 (요청사항) 신청이유 (별지 사용 가능) (구체적 사안) 입증자료(첨부) 「교원지위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 귀중 첨부서류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신청 접수 분쟁조정개시 분쟁조정 결과 통보 위원회 신청인 위원회 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식 13]

분쟁조정 합의서

	신청인		피신청인
성 명		성 명	
소속학교 /직급		신청인과 관계	
연락처		연락처	
주 소		주 소	
분쟁경위			
당사자의 의견	1. 신청인의 의견 요지 2. 피신청인의 의견 요지		
조정결과			
	0000년 (OO월 OO일	
	신청인 피신청인	(서명 또는 날((서명 또는 날	인)
	○○교육지원청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위원장	(직인)

▶ [서식 14]

제○회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협의록(예시)

일 시 장 소 위원정수:		20 년 월 일(요일	일) 시 분
위원정수 :			
	명	참석위원 : 명	불참위원 : 명
		신청인(피해교원)	참석 □ 불참 □
관련 당사자	참석 유무	피신청인(학생, 학부모 등)	참석 □ 불참 □
		피신청인 보호자	참석 □ 불참 □
5. 관련 당사자 6. 조정합의서 : () 발언자의 내용 [참석위원 등 [위원 제척 [분쟁조정의 [당사자 의견 [질의응답] [조정안의 현	진술(피해교원, 기 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로 구체적으로 기재 <i>주의사항 전달</i>]	

▶ [서식 15]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대장

																	의결	내용						
			하	피 인	해교 적사	원 항	건 인	칠해져 적사	다 항	침	교권 침해 사안	사 아	사안접수일	사실	교권보호	가 ^ਰ 조	해자 치	보 호 자		결 간	조치			
순	지역	설립	하더네	소 속	직급	성명	구분	성명	피해교 원과 의관계	침해유형	해 시안 유 내용 형 (6하 원칙 기재)	내용 말 (6하 생 원칙 일		내용 말 (6하 생 원칙 일		사 실 조 사 기 간	교권보호위원회개최일	본 조 치	특별교육부과 국용	보호자특별교육부과내용	피 해 자 지	결과 통보일	이행 결과 (O,X)	비고

- ※ 내용 란에는 사안 발생일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며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 구분 란에는 학생, 학부모 등 기입
- ※ 결과통보일은 피해교원 및 가해자에게 통보한 날짜
- ※ 의결 내용에 분쟁조정 결과도 포함하여 작성

▶ [서식 16]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위촉) 동의서 및 비밀서약서

성 명					생년월	늴일			
소속					직	급			
주 소									
어리는	근무처				연락	처			
연락처	E-mail								
위촉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u>교육지원청</u>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서식 17]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위촉장

위 촉 장

소 속:

성 명:

귀하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인)

▶ [서식 18] 양측 관계자 작성

사안 종결 확인서						
성 명						
소속학교 /직급						
연락처						
주 소						
사안 종결 희망 사유						
기타 의견						
	2○○○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학교장 귀하					

[서식 19]

즉시 분리 의사 확인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지위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 분리'를 □ 희망합니다. □ 희망하지 않습니다.

- 제도 도입 취지: 피해교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모든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고조된 교육활동 침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완화하고 자 함.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함(「교원지위법」 제20조제2항)
 - ※ 사안조사 전 단계이므로 가해자는 가해 추정자의 의미임
- 분리기간은 분리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교원 의 반대 의사가 있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분리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 분리 시행 당일은 분리기간에 산입(초일 산입)되며, 공휴일이나 토요일도 분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학교는 분리조치 시행을 위해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분리 기간 동안 관련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 등의 방안을 마련
- 학교내 별도 공간 마련이 어려워 가정 또는 기타 학교 외의 장소를 이용하여 분리를 시행할 경우 분리 기간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가능

20 년 월 일

피해교원 : (서명 또는 인)

○○학교장 귀중

▶ [서식 20]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

○○중학교

수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

- 1. 관련
-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
- 나. ○○○○학교-○○○○ (2024. 0○. ○○) (※관련 내부공문)
- 2.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피해교원 인적사항

구분	소속	성 명	피해교원 임신, 장애 여부	비고
피해교원	○○중학교	000	V	3-1담임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자 인적사항

구분	소속	학년반	성 명	침해학생 장애 여부	비고
학생	○○중학교	3-1	000	V	

구분	자녀소속교	성 명	침해 보호자 장애 여부	비고
보호자	○○중학교	000	V	

※ 보호자 인적사항은 보호자가 침해행위자일 경우만 기록

- 붙임 1.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보고서 1부.
 - 2. 피신청인(학생,보호자) 의견서 ○부.
 - 3. 참고인 의견서 ○부.
 - 4. 피해교원, 가해학생 보호자 개인정보(우편번호, 주소, 보하자명, 학생과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등)
 - 5. 기타 위원회 심의 · 의결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끝.

○○중학교장

담당자 검토자 결재자

▶ [서식 21]

특별교육 안내문(예시)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교육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학교 ○학년 ○반 ○○○와 보호자
이수내용	○○○ 특별교육 ○시간 ○○○의 보호자 특별교육 ○시간
이수기관	(예시) ○○교육지원청 WEE센터 (063-○○○-○○○)
이수기한	20

- 2. 사전에 이수 기관에 연락하셔서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 . .

○○○학교장(직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 [서식 22]

심리치료 안내문(예시)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리치료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자	○○○학교 ○학년 ○반 ○○○와 보호자
이수내용	○○○ 심리치료 ○시간 ○○○의 보호자 심리치료 ○시간
이수기관	(예시) ○○교육지원청 WEE센터 심리치료 지정기관 (063-○○○-○○○)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전문의 (063-○○○-○○○)
이수기한	20

- 2. 사전에 이수 기관에 연락하셔서 일시, 장소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 내용을 즉시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 . . .

○○○학교장(직인)/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

▶ [서식 23]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인	피신청인
성명		
구분	(교원, 학생, 보호자)	(교원, 학생, 보호자)
소속		
주소		
연락처		
신청취지		
신청원인	(필요 시 별지 사용 가능)	
증빙자료		

위 당사자 간에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여 줄 것을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위원장 귀하

▶ [서식 2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청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제5항 단서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호조치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오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상(지무상) 오양상인을 먼저 신청하였나요? □예 □아니오
- ※ 본인은 **공무상(직무상) 요양승인. 시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자해.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등 제3자에게 동일한 사유로 보호 조치 비용을(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를 신청한 경우에 교육청에 보호조치 비용 부담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이해하 였습니다. 신청자: (인)

	성명	상			2
시원이	주소				
신청인	전화번호				
	소속				
치료를 요하는 부분(병명)					
치료기간	20		. ~ 20 .	(일)
	보호조치의 종류		진료내용	응(병명)	예상금액
시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신청액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합계				
보호조치 종류	신청인 제출서류(각 1부)				비고
공통사항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보고서 (침해자의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탈)	※전북교육인권센터 공문 제출
심리상담 및 조언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 2. 상담기관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1.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보서 2. 요양급여의 내용을 쓴 의사의 증명서 3. 요양급여 청구서 및 영수증 등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 1. 심리 및 상해 치료 비용은 **1회 10만원 이상 청구**, **1인당 120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 2. 신청서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공문 잡수
- 3.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이 있거나 기타 보험으로 보상받은 경우 **중복** 청구 불가
- 4. 비용지급 대상자 선정 여부 결과 통보(공문)는 접수일로부터 4주 정도 소요
- 5. 비용부담 대상자로 선정되신 달을 가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담·치료 시작. 1년 이내에 상담·치료 종결

▶ [서식 25] (교원□>전북교육인권센터로 유선문의 후 공문 발송)

교육활동 침해행위 형사고발 요청서						
			 닌청자			
학교명			담임구분	담임() 비담임()		
성명			성별	남() 여()		
직급			교원구분	정규() 기간제()		
연락처	근무처		휴대전화			
신력시	E-mail					
		침호	해행위자			
성명			소속			
신청인과의 관계			직위(신분)			
지역교권 보호위원회 결과	1. 교육활동 침해행위 세부 내용 2.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등					
요청사유						

본인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교육감 대리 고발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예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

특이사항

직 위:

성 명:

(인)

▶ [서식 26]

교원 치유(상담 및 진료) 신청서

※온라인 신청 후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자가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며 전화상담 후 기관 이용 가능

1. 인적사항

□신규 □연장

신청일	소 속	□공립 □사립 학교	성 명	(자필서명)
성 별	직 위	(교사, 기간제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원 등)	지역교	1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
생년월일	전화번호			O , X

2. 상담(진료, 법률) 신청 (※해당란에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	0 ‡	① 상담()	② 진료()	③ 법률()		
οl	0	① 교육활동	침해(匚	학생 □학부모)	2 2	직무스트레스()	③ 동료관계())
ol	유									

- ※ 교원치유를 위한 상담 목적으로만 신청 가능 / 상담을 이용할 경우, 당일 취소 시 상담비는 본인 부담
- 3. 희망 (상담, 진료, 법률)기관 (※상담기관 및 진료기관은 교육활동보호센터 자료실 참고)

희망기관		
기 간	횟수	

개 인 정 보 수 집 동 의 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최소한의 기본 정보(성명, 생년월일, 소속, 휴대전화번호, 성별, 신청사유)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교원치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이용되며, 제 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시 프로그램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의 신상정보는 교원치유지원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 ※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원치유지원프로그램 완료 후 만족도 설문조사가 문자로 전송되며 응답 필수
- ※ ☎ 교권보호 직통번호 139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 [서식 27] (교원□>전북교육인권센터로 유선문의 후 공문 발송)

	소속 학교		직위				
당사자	성명		전화번호 / 이미	일			
	교원 구분				(정규 교원, 기간제 등)		
		희망 지	원 유형		□대면 □비대면		
				기초돈	된 사실관계		
		질의 내용					
	(자문) 내용						
위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인)							

▶ [서식 28] 교원치유프로그램 상담 지원 기관(53개 기관)

순	이름	지역	전문 상담기관	상담전문분야
1	김동원	광주	광주대 심리학과	성격, 대인관계, 트라우마, 정신역동
2	김완순	군산	군산부부가족상담연구소	우울, 불안, 트라우마, 아동청소년 부모
3	전순애	군산	군산아동청소년가족상담비전센터	분석적 음악치료, 트라우마, 인지행도
4	조은숙	군산	조은심리상담센터	개인, 가족, 부모,집단상담
5	최혜란	군산	최혜란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갈등, 가족
6	오정희	남원	같이상담심리센터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7	최은미	완주	선우심리상담터	성인 및 부부, 정서상담, 청소년상담
8	지아가	완주	선한힘심리상담교육센터	정신건강전반, 대인관계
9	강순미	익산	따뜻한 상담소-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부모상담
10	김옥엽	익산	마음나무심리상담센터	심리, 정서, 가족, 부부, 부모교육
11	민선영	익산	전주비전대학교	대상관계, 인지행동, 게슈탈트
12	오은아	익산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익산센터	영유아부터 전연령층 - 심리상담, 검사 치료 교육
13	민요달	익산	마음이 보낸 편지 김용임심리상담센터	트라우마, 성격, 게슈탈트, NLP
14	이제순	장수	재순상담센터	개인, 집단, 가족상담
15	윤금숙	전주	굿프랜드심리상담센터	모래놀이
16	권애경	전주	권애경대상관계심리치료클리닉	정신분석상담
17	정경자	전주	드림심리상담센터	직무스트레스, 관계갈등, 우울, 트라우마
18	박민자	전주	마음나무 전북미술치료교육센터	개인, 집단 가족치료 미술치료 및 상담
19	이미현	전주	마음뜰 심리상담센터	자살, 자해, 위기상담, 정서, 성격, 가족
20	김현옥	전주	마음사랑심리상담센터	인지행동치료, 마음챙김
21	서민영	전주	마음상담코칭센터	개인, 집단, 심리검사, 정서상담
22	송기춘	전주	마음샘아동가족상담센터	개인상담
23	이여진	전주	마음성장심리상담센터	성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상담
24	장숙희	전주	마음이 보낸 편지	대인관계, 정서, 우울, 불안, 공황, PTSD
25	김용임	전주	마음이 보낸 편지 김용임심리상담센터	개인,집단,수퍼비전
26	여숙현	전주	마음편한상담심리연구소	정서, 진로, 대인관계, 갈등 대화법

순 이름 지역 전문 성담기관 성담전문분야 27 김문희 전주 엔토분석심리상담센터 심리치료, 모래들이치료, 미술치료 28 김경희 전주 모래와하늘아동가족상담센터 개인, 가족상담, 상담교육, 심리건사 29 박윤자 전주 보나심리상담센터 투모,가족,개인,집단상담 30 권선이 전주 보다라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심리검사, 학습교칭, 대인관계 31 이성자 전주 무석대학교 이동, 청소년, 성인 상담 33 최이론 전주 무석대학교 이동, 청소년, 성인 상담 33 최이론 전주 무석대학교 이동, 청소년, 성인 상담 34 조남정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인지행동, 실존주의기법 34 조남정 전주 우석대학교 과다, 교육, 교원치유 36 성업민 전주 오로, 보부가족 성담 35 양의주 전주 원로대학교 과무소문선년, 생임 소명 소로, 교류보지육 36 석정민 전주 전로대학교 과무소문선년, 사용전념, 인지행동, 천료 36 석정시, 진료 37 김건연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지료, 보관하로 36 소련시로, 대인관계 소련시로		OL-	TIM	저는 사다리카	YPCFHO HOF
28 김경희 전주 모래와하늘아동가족상담센터 개인, 가족상담, 상담교육, 심리건사 29 박윤자 전주 보나심리상담센터 트라우마, 부부, 가족 치료 30 권선이 전주 세움가족상담센터 부모,가족,개인,집단상담 31 이성자 전주 색(SSAC) 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심리검사, 학습코칭, 대인관계 32 손종우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인지행동, 실존주의기법 34 조남정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학교, 가족, 교원치유 35 양의주 전주 월든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진로, 부부가족 상담 36 석정민 전주 인퍼트임상심리센터 아동청소년, 수용전념, 인지행동 치료 37 김주연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직무스트레스, 정서, 진로 38 이영순 전주 전북대학교 실리학과 성격, 심리 및 정신건강, 부부, 가족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바무, 가족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제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제 43 강해정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해정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해란 전주 최해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안문계 효과부당, 사회성, 부부길동, 가족 46 최해란 전주 최해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양산성당,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관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엔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0 소현영 전주 회망드림심리상담엔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모네리 임건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29 박윤자 전주 보나심리상담센터 트라우마, 부부, 가족 치료 30 권선이 전주 세움가족상담센터 부모,가족,개인,집단상담 31 이성자 전주 색(SSAC) 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심리검사, 학습코칭, 대인관계 32 손종우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인지행동, 실존주의기법 34 조남정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학교, 가족, 교원치유 35 양의주 전주 월트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진로, 부부가족 상담 36 석정민 전주 월트심리상담센터 가존, 교원치유 37 김주연 전주 월트심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수용전념, 인지행동 치료 37 김주연 전주 전북대학교 실리학과 직무스트레스, 정서, 진로 38 이영순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정구스트레스, 정서, 진로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당, 성격, 대인관계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보안당권, 전후,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수대학교 성의소당원대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3 강혜정	27	김문희	전주	멘토분석심리상담센터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30 권선이 전주	28	김경희	전주	모래와하늘아동가족상담센터	개인, 가족상담, 상담교육, 심리건사
31 이성자 전주 백(SSAC) 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심리검사, 학습코칭, 대인관계 32 손종우 전주	29	박윤자	전주	보나심리상담센터	트라우마, 부부, 가족 치료
32 손종우 전주 우석대학교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33 최어론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인지행동, 실존주의기법 34 조남정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학교, 가족, 교원치유 35 양의주 전주 월든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진로, 부부가족 상담 36 석정민 전주 인퍼트임상심리센터 아동청소년, 수용전념, 인지행동 치료 37 김주연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정격, 심리 및 정신건강, 부부, 가족 38 이영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가족,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용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용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실리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어통청소년, 생인, 가족치료 47 김현주 </td <td>30</td> <td>권선이</td> <td>전주</td> <td>세움가족상담센터</td> <td>부모,가족,개인,집단상담</td>	30	권선이	전주	세움가족상담센터	부모,가족,개인,집단상담
33 최이론 전주	31	이성자	전주	싹(SSAC) 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심리검사, 학습코칭, 대인관계
34 조남정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학교, 가족, 교원치유 35 양의주 전주 월든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진로, 부부가족 상담 36 석정민 전주 인퍼트임상심리센터 아동청소년, 수용전념, 인지행동 치료 37 김주연 전주 전복대학교 심리학과 직무스트레스, 정서, 진로 38 이영순 전주 전복대학교 심리학과 성격, 심리 및 정신건강, 부부, 가족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가족,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본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실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길등, 기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생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목고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고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0 소현영 전주 헤라드림심리상담연구요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32	손종우	전주	우석대학교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35 양의주 전주 월든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진로, 부부가족 상담 36 석정민 전주 인퍼트임상심리센터 아동청소년, 수용전념, 인지행동 치료 37 김주연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직무스트레스, 정서, 진로 38 이영순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성격, 심리 및 정신건강, 부부, 가족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보오상담, 성격,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성격, 대인관계 43 강해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엄무소 서역 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해보석용사원, 부부2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아동청소년, 생인, 가족치료 47 김현주 전주 하고나라스로 연기 보고나라스로 연기 48 신유순 전주	33	최아론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인지행동, 실존주의기법
36 석정민 전주 인퍼트임상심리센터 아동청소년, 수용전념, 인지행동 치료 37 김주연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직무스트레스, 정서, 진로 38 이영순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성격, 심리 및 정신건강, 부부, 가족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가족,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길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성인성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육코징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고나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0 소현영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34	조남정	전주	우석대학교 교수	학교, 가족, 교원치유
37 김주연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직무스트레스, 정서, 진로 38 이영순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성격, 심리 및 정신건강, 부부, 가족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가족,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길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상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육코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하고맘허고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0 소현영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35	양의주	전주	월든심리상담센터	개인, 집단, 진로, 부부가족 상담
38 이영순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성격, 심리 및 정신건강, 부부, 가족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길등, 가족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어도청소년, 채선, 부부2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아도청소년, 채선, 부부2등, 가족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도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라상담센터 인지행동정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36	석정민	전주	인퍼트임상심리센터	아동청소년, 수용전념, 인지행동 치료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가족,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길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성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옥코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경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37	김주연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직무스트레스, 정서, 진로
40 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가족,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길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어통청소년, 생인, 가족치료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통청소년, 생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경우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38	이영순	전주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성격, 심리 및 정신건강, 부부, 가족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계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화성, 부부길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생인상당,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육코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당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39	홍지영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정신역동, 인지행동, 현실치료, 실존치료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길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성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육코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0	김인규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가족, 청소년, 대인과정접근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갈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성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육코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1	이호준	전주	전주대학교 교수	청소년, 부모상담, 성격, 대인관계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갈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성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육코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2	이길구	전주	전주대학교 명예교수	부부상담, 진로상담, 교류분석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갈등, 가족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성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육코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3	강혜정	전주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정신분석, 인지행동정서상담, 심리검사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성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육코칭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4	최지영	전주	지안심리연구소	성격, 대인관계, 성격검사, 정서상담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5	최혜란	전주	최혜란 전주 심리상담센터	대인관계 학교부적응, 사회성, 부부갈등, 기족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6	최혜란	전주	최혜란심리상담센터	성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부모양육코칭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7	김현주	전주	하가심리발달센터	아동청소년, 성인, 가족치료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8	신유순	전주	하모니 가족상담연구소	모래놀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49	임은실	전주	해피드리머스 심리상담연구원	심리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치료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50	소현영	전주	허그맘허그인 심리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 가족 상담
	51	김희은	전주	희망드림심리상담연구소	인지행동치료, 게슈탈트, 가트맨 부부치료
53 정지원 정읍 숙심리상담센터 미숙치료 의사소통 마은책긴	52	김선희	정읍	김선희 부부 가족 상담센터	심리, 가족, 부부상담
	53	정지원	정읍	숨심리상담센터	미술치료, 의사소통, 마음챙김

▶ [서식 29] 교원치유프로그램 진료 지원 기관(73개 기관)

순	병원/약국명	병원/약국 구분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1	원광대학교병원	상급종합	063-859-1114	익산시무왕로895
2	전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	063-250-1129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3	대자인병원	종합병원	063-240-2000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4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전주열린병원	종합병원	063-281-8889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7-0, 1동
5	의료법인영경의료재단전주병원	종합병원	063-220-7200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 13
6	익산병원	종합병원	063-840-9114	익산시 무왕로 969
7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종합병원	063-530-6000	정읍시 충정로 606-22
8	재단법인예수병원유지재단예수병원	종합병원	063-230-8114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9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종합병원	063-472-5000	군산시 의료원로 27
10	석정웰파크병원	병원	063-560-1000	고창군 고창읍 석정2로 147
11	엠마오사랑병원	병원	063-230-5300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402-35
12	의료법인 유진의료재단 동서병원	병원	063-445-7500	군산시 백릉로 34
13	의료법인 한길사랑의료재단 한길병원	병원	063-260-9900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 43
14	남원성일병원	정신병원	063-634-8898	남원시 사매면 춘향로 822-129
15	미래병원	정신병원	063-540-8800	김제시 금구면 낙산1길 74-1
16	선병원	정신병원	063-643-7575	임실군 덕치면 사곡1길 9-8
17	세미한병원	정신병원	063-548-7575	김제시 백구면 영상3길 25-0
18	신세계병원	정신병원	063-545-8700	김제시 금산면 구성5길 84-15
19	의료법인성은의료재단참조은병원	정신병원	063-538-9730	정읍시 새암길 29-11
20	의료법인완주의료재단한마음 화산병원	정신병원	063-260-1300	완주군 화산면 운제로 100
21	의료법인지석의료재단 신세계효병원	정신병원	063-545-8100	김제시 금산면 구성5길 84-15
22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정신병원	063-240-2100	완주군 소양면 소양로 465-23
23	희망병원	정신병원	063-540-8855	김제시 금구면 낙산1길 74-1
24	개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452-0005	군산시 번영로 312

순	병원/약국명	병원/약국 구분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25	고효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857-7575	익산시 선화로 65, 2층
26	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13-0200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97, 드림프라자 3층 302,303호
27	김봉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원	063-632-7582	남원시 남문로 437
28	김임신경정신과의원	의원	063-272-7676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한국투자증권빌딩 3층
29	김지훈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852-8588	익산시 동서로 230, 3층 1호
30	김태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83-7575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193
31	김현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12-5544	완주군 이서면 기지로 56, 3층
32	김형욱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535-7776	정읍시 남북로 34, 201호
33	김형준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715-2522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57-3, 3층
34	나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464-5500	군산시 월명로 252, 2층
35	남청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837-0003	익산시 무왕로 1069, 3,4층
36	다솜신경정신과의원	의원	063-272-7582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0, 401호~404호
37	다온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46-4535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52, 4층
38	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855-0887	익산시 중앙로 6
39	마음의평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25-7582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57, 602호
40	마음편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25-1675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156, 4층
41	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32-2478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78, 1층
42	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74-7800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81, 동원타워 5층
43	박남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858-3988	익산시 무왕로 1116
44	박종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855-3140	익산시 인북로 164
45	밝은마음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461-5050	군산시 공단대로 396, 2층
46	배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77-3332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38, 2층
47	백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857-2020	익산시 선화로 88, 강남빌딩 3층
48	서울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27-3939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50, 404호

순	병원/약국명	병원/약국 구분	전화번호	소재지주소
49	아이나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76-2100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427
50	엘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76-7575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58
51	오근영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85-8000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77, 3층
52	오영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72-0890	전주시 완산구 당산로 106
53	우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74-7142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59, 2층
54	유상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73-0013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52
55	윤정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76-1100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62
56	은헌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21-7866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1, 3층
57	이자영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27-3090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4층 401호
58	장앤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84-8310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2
59	정일성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442-2156	군산시 중앙로 71
60	정주리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26-5488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38, 5층
61	제일정신과의원	의원	063-545-3800	김제시 중앙로 103
62	조광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37-5050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208, 2층 202호
63	중앙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535-8876	정읍시 중앙1길 66-1
64	최명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56-3300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85, 1층
65	최신경정신과의원	의원	063-633-0364	남원시 용성로 112
66	치유숲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32-8575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20
67	하나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581-6886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233, 천조빌딩 2층
68	한사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653-6230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42-1
69	행복한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857-0405	익산시 고현로 112
70	허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54-5599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103, 1,4층
71	현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851-2042	익산시 인북로 266, 2층
72	현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254-7561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72, 3층
73	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원	063-468-5266	군산시 백토로 114, 광명빌딩 3층 302호

5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교원지위법」)

[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 ②「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 제5조(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① 각급학교 교육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유영한다.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교원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3. 9. 27.〉[전문개정 2008. 3. 14.]
-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제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查)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2. 3.〉
 -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전문개정 2008. 3. 14.]
-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 5. 「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 12. 27.〉

- **제8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될 수 없다.
 - 1. 「국가공무워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 제8조의3(위원의 신분 보장)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장기의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 제8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제127조 및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23.]
-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9. 4. 23.〉
 - 1. 심사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 ③ 처분권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취지
 - 에 따라 조치(이하 "구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23.〉

-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 ⑤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신설 2021. 3. 23.〉
- ⑥ 소청심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21. 3. 23.]

제10조의2(결정의 효력)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5로 이동 〈2021. 3. 23.〉]

제10조의3(구제명령)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구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구제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3.]

- 제10조의4(이행강제금)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분권자가 제10조의3 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조에서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권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하지 못한다.
 - ⑤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구제명령을 받은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3.]

- 제1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1. 3. 23.〉]

-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①「교육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②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합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전문개정 2008. 3. 14.]
- 제12조(교섭·협의 사항)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는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 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13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설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섭·협의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 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시·도에 각각 교원지위향 상심의회를 두되 교육부는 7명 이내, 시·도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 ②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과 위원의 자격 및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 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추진 목표 및 전략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관리 및 교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3.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4.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
 - 5.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④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여건의 변화 등으로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9. 27.〉
 -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 ⑥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 ⑦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 ⑧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 제1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제14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 제16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조치,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9. 27.〉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 9. 27.〉]

- 제17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 9. 27.〉]

-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 1. 제1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 2. 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7.〉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 9. 27.)]

-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가. 「형법」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 2.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2023. 9. 27.〉]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합청"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1. 심리 상담 및 조언
-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19. 12. 10., 2023. 9. 27.〉
- 1. 삭제〈2023. 9. 27.〉
- 2. 삭제〈2023. 9. 27.〉
-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⑤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피해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합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⑥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및 분리조치의 방법·기간·장소,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33조로 이동 〈2023. 9. 27.〉]

- 제21조(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 정 2023. 9. 27.〉
 -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 9. 27.〉]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워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 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22조는 제35조로 이동 〈2023. 9. 27.〉]

제23조(특별휴가)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9. 4. 16.]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16조의3에서 이동 〈2023. 9. 27.〉]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 1. 학교에서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4. 출석정지
- 5. 학급교체
- 6. 전학
- 7. 퇴학처분
- ③ 교육장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제2항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④ 교육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7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⑧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침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가중하여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7.〉
- ⑨ 침해학생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 ⑩ 제2항에 따라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①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19. 4. 16., 2023. 9. 27.]

[제18조에서 이동 〈2023. 9. 27.〉]

-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 2.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③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2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축소·은폐 금지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 ② 관할청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학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평가 등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16., 2023. 9. 27.〉
 - ③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50조 및「사립학교법」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3. 9. 27.〉[본조신설 2016. 2. 3.]

[제16조에서 이동 〈2023. 9. 27.〉]

- **제28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29조(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지정 등) ①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본조신설 2016. 2. 3.] [제목개정 2023. 9. 27.] [제17조에서 이동〈2023. 9. 27.〉]

-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업무,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교육활동침해행위를 한 사람 및 피해교원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교원,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31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18조의2에서 이동〈2023. 9. 27.〉]

- 제3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6. 2. 3.]

[제20조에서 이동 〈2023. 9. 27.〉]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5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소청심사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23. 9. 27.]

[제21조에서 이동 〈2023. 9. 27.〉]

- **제35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제5항 또는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 정 2023. 9. 2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22조에서 이동〈2023, 9, 27.〉]

부칙 〈제19735호, 2023. 9.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감의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원의 유아 및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분리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할청 또는 고 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 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지역교권교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5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5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종전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8항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3. 28.] [대통령령 제34326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8. 2.]

-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 2.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
 -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법령의 제정·개정 등에 따라 인용조항이나 표기 등을 단순히 반영하기 위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24. 3. 26.〉]

-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조직의 구성 · 운영
 - 2.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 및 홍보
 - 3.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의 치료, 전보(轉補) 등 보호 조치
 -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률 상담

- 5.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 8. 그 밖에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3. 26.]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18조로 이동 〈2024. 3. 26.〉]

-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 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2. 5., 2019. 10. 15., 2024. 3. 2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 ③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9. 10. 15.〉

제6조의2 삭제〈2019. 10. 15.〉

제6조의3 삭제〈2019. 10. 15.〉

-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 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 4, 29.]
-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 1.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부장관
 - 2. 공립·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감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 4. 29.]

-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보호조치 현황
 -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 현황 3의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현황
 - 4.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 3. 26.〉]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11조는 제22조로 이동〈2024. 3. 26.〉]

- **제12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3. 26.〉
 - ②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3. 26.〉
 - 1. 해당 시·도 의회 의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제1 항에 따른 교육의원을 포함한다)
 - 2. 해당 시·도 교육청의 교원정책을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 3.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
 -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5.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6.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7. 해당 시·도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시·도경찰청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8.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육감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13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

- 다. 〈개정 2024. 3. 26.〉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해당 안건과 관련된 교원 및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된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 제14조(시·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 10. 15.]
-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교육청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합 학교의 교원
 -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3.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
 -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되다.
- 1.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3. 26.]

-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6.]

-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 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하다.
 -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3. 26.]
-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 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교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로 이미 가해자와 피해교원이 부리된 경우
-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 1. 교육활동 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부리조치에 관한 피해교원의 의사를 확인할 것
-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리조치의 기간을 정할 것
- 3. 분리조치에 필요한 별도의 공간을 학교 내에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본조신설 2024. 3. 26.]

[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2024. 3. 26.〉]

-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3. 26.〉
 - 1. 「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해당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인 경우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로 해당 교원이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 나. 사안이 중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4. 3. 26.〉]

-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6.〉
 - 1. 관할청이 정하는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2.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 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3. 26.〉
 - 1.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2. 그 밖에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 등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관할청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2조의4에서 이동〈2024. 3. 26.〉]

-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6.]
-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 1.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프로그램의 운영 방법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 라.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다.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라.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의3에서 이동 〈2024. 3. 26.〉]

-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 3, 26.〉
 -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② 삭제 〈2024. 3. 26.〉
 -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학생이 전학할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한다. 〈개정 2024. 3. 26.〉
 -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 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24. 3. 26.] [제11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4. 3. 26.〉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설립한 기관
 - 라. 그 밖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 2. 피해 교원을 위한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자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 3. 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 것
-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춘 상담실이 있을 것
 - 가. 인터넷 이용시설 및 전화 등 상담·자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나.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상담·자문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본조신설 2016. 8. 2.]

[제목개정 2024. 3. 26.]

[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교원과 그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 · 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 나.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및 분쟁 조정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본조신설 2024. 3. 26.]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26.〉

- 1. 교원(「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관사의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창,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현황
- 2. 교원 관사의 노후화 정도 현황
- 3. 교원과 경찰관서 간의 긴급연락체계 등 안전망 구축 현황
- 4. 교원의 성별 현황

- 5. 그 밖에 관할청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6.〉
-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20. 6. 9.]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4. 3. 26.〉]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
-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 보고의 접수
-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고발
- 6.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구상권의 행사
-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24. 3. 26.]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26.〉]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19. 10. 15.]

[제18조에서 이동 〈2024. 3. 26.〉]

부칙 〈제34326호, 2024. 3.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9735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유치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심의 중인 사항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3. 23.] [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 3. 23.,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5조제1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및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을 포함한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형법」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 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3-12호, 2023. 3. 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육기본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3조(보호자) ③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다.
 - ② 보호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21. 3. 23., 2023. 9. 27.〉
 -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3. 9. 27.〉 [본조신설 2022. 12. 27.]
-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 21조(교직원의 임무) ① 원장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한다.
-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호자는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의 범위에서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32호, 2023. 12. 26., 일부개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 3. 16., 2023. 12. 26.>
 -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2.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3. "아동학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26.〉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아동복지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의 판단에 참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
- 제17조의3(교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사건 처리에서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 수사 및 제24조후단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때 참고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과 같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할 때 사건기록에 편철된 관할 교육 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教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형 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139조(인권옹호직무방해)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 ③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거나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관리하는 자기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 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1장 무고의 죄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1995. 12. 29.〉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제30장 협박의 죄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제42장 손괴의 죄

-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68조(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69조(특수손과)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 4. 5., 2016. 12. 20.〉

- 1. 「형법」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 (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 2. 「형법」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 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 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 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 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 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 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 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3.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 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4. 「형법」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형법」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② 「형법」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 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형법」제 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다. [개정 2020.5.19]
 - ③ 제1항의 방법으로「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2, 2020.5.19] [본조제목개정 2017.12.12.]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 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

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시행일 2020.6.25]]

[본조신설 2020.3.24] [[시행일 2020.6.25.]]

-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5.19.]
-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5.19] [[시행일 2020.6.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4. 1. 23.] [법률 제20069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